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목 차

제 I 편 총 론

제1장 총칙(변경없음)	/ 1
제2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10

제 II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	/ 12
제2장 공동주택용지(변경)	/ 17
제3장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변경없음)	/ 25
제4장 상업용지(변경없음)	/ 30
제5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 37

제 III 편 환경부문 시행지침

제1장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변경없음)	/ 44
제2장 무장애도시 조성계획(변경없음)	/ 49
제3장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변경없음)	/ 52

제 IV 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도로시설(변경없음)	/ 57
제2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변경없음)	/ 66

제1장 가로축 경관(변경없음)	/ 71
제2장 보행축 경관(변경없음)	/ 74
제3장 수경축 경관(변경없음)	/ 76
제4장 녹지축 경관(변경없음)	/ 78
제5장 통경축(변경없음)	/ 79
제6장 거점 경관(변경없음)	/ 80
제7장 공원 경관(변경없음)	/ 81
제8장 건축물 경관(변경)	/ 83
제9장 색채 경관(변경없음)	/ 87
제10장 옥외광고물(변경없음)	/ 98
제11장 가로시설물(변경없음)	/ 108
제12장 야간경관(변경없음)	/ 118

제 1 편 총론

제 1 장 총칙(변경없음)

제 1 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군산 미장 도시개발사업(이하 “군산 미장지구”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며, 구역 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상세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5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 총칙과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편은 건축부문, 제3편은 환경부문, 제4편은 공공부문, 제5편은 경관부문에 각각 적용한다.

제 4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군산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③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내용이 기존 또는 재개정으로 인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에 따른다.

④ 본 지침의 내용이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것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 5 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용지”라 함은 본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다.

1. 단독주택용지 :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 아파트용지
3. 근린생활시설·준주거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4. 상 업 용 지 : 일반상업용지
5.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지

제 6 조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 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② “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③ “최소획지규모”는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대지분할제한 기준을 준용하되, 세장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제 7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본 지

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 타 법령에 의한 별도의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정하며,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②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되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불허한다.

③ “권장용도”라 함은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를 말한다.

④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를 말한다.

⑤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⑥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⑦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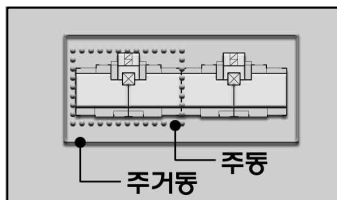
1. 위치 : 1층 또는 지하층에 한한다.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⑧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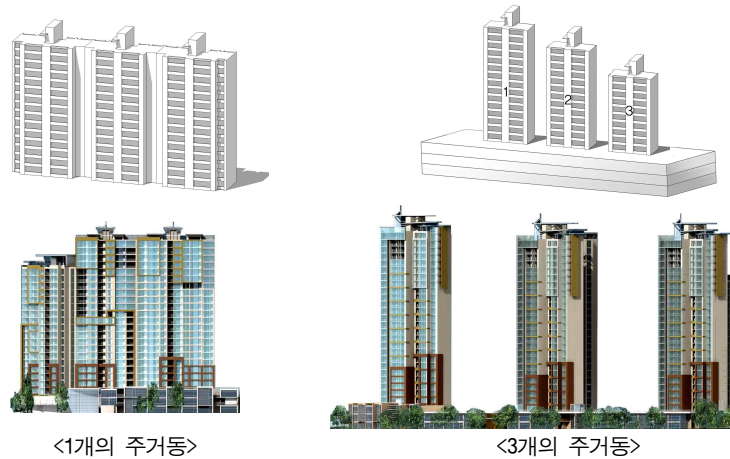
⑨ “주거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⑩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림 1-1-1>
하나의 주거동에 2개의 주동이
있는 경우 예시도



〈그림 1 -1-2〉 주거동개념도



- ⑪ “부대복리시설” 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 ⑫ “근린생활시설 등” 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제 8 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 ① “세대(가구)” 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 ② “최고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③ “최저층수”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 ④ “평균층수” 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용지 내 모든 주동간 층수의 평균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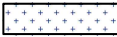
• 산식 : $A \div B \leq C$

※ A : 주동별 층수의 총합(옥탑층 제외)

B : 총 주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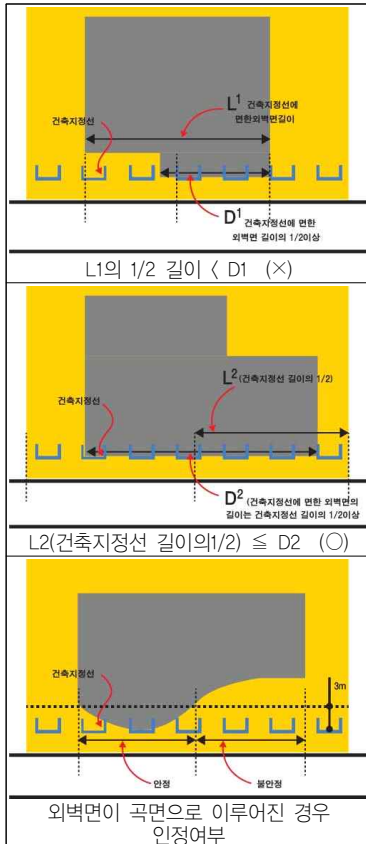
C : 지정된 평균층수

- ⑤ “건축높이지정(16m~19m)구간”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16m~19m)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⑥ “최고높이” 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한다.

<그림 1-1-3> 건축지정선 예시도



제 9 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한계선” 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이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외벽면이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건축지정선 길이의 1/2 이상이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지정선에 접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통로기능의 피로티구조 부분
2. 외벽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지정선으로부터 3m 이하로 이격된 부분

- 도면표시 : 

③ 상기 건축선이 적용되었을 때 해당 대지 경계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지정목적

스카이라인의 리듬감 및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형성, 시각적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효과를 유도하는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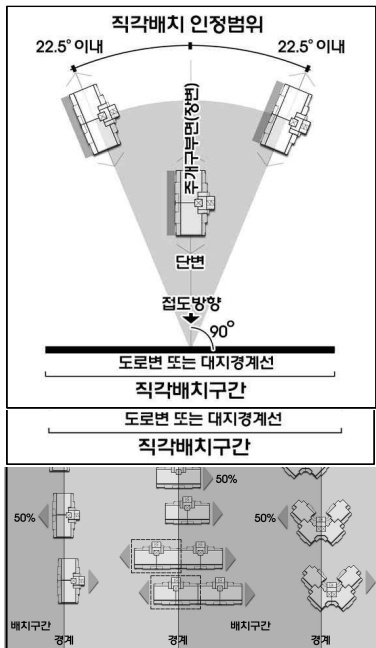
② 배치구간별 정의

1.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이라 함은 12층 이하의 지정된 층수 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2.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

<그림 I -1-4>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③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한다.(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탑상형 : 해당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한다.(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공동주택용지내 배치구간에 주동(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최초 2호를 기준으로 한다)이 걸친 경우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같은 면적 비율로 걸친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 11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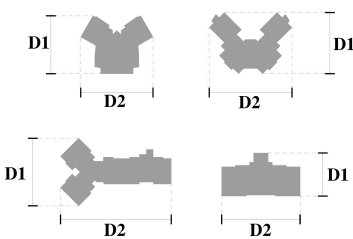
②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주평면상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0이하이거나,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잔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③ “피로티 구조”라 함은 공동주택용지 내 보행동선의 연결 및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이 때,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고,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용지 내 피로티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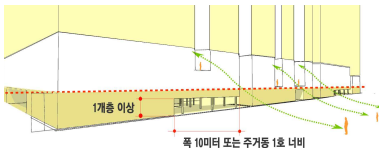
④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2/3 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⑤ “투시형 벽면”은 외벽면 면적의 50% 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조성된 벽면을 말한다.

<그림 I -1-7> 탑상형아파트



<그림 I -1-8> 피로티 조성 예시도





⑥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⑦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4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⑧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 12 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의 지정으로 대지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며,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공동주택용지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개별 조성지침에 의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며,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필지형 단독주택용지에서 피로티 하부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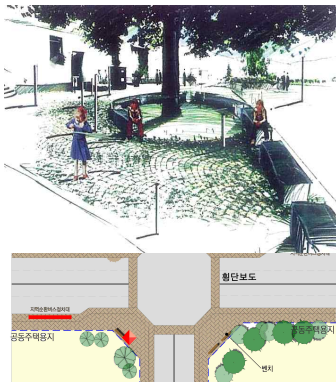
3. 포장

보도와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 의해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②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를 말한다.

1. 공개공지의 배치

<그림 1-1-9> 공개공지 조성예시도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한다.

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2.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1/2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개공지 시설기준

가.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하로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종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마.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③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의 지정으로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며,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냉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투수성 포장으로 하여,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단차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한다.
3. 공공조경 내에는 <표 I-1-1>의 식재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산책로 및

휴게기능을 가진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표 1-1-1>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15 이상	2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25 이상	50

- 도면표시 : 

<그림 1-1-11> 공공보행통로 조성예시도



④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시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2.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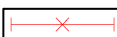
- 도면표시 : 

제 13 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허용구간” 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③ “전면도로” 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④ “보행우선구조” 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으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그림 I -1-12> 보행우선구조 예시도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m 이상으로 한다.

⑤ “보행 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⑥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 14 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지침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 15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본 사업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6 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중 건축계획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 표시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군산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 대상에 한한다.

제 17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본 사업 준공 이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부 칙)

본 지침은 결정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단독주택용지(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 조 (가구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가구 · 획지를 기본단위로 한다.
- ② 획지의 분할은 분할에 따른 각각의 획지구모가 최소규모 200㎡이상을 만족하고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하며, 획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획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2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가구수 등)

- ①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획지당 허용 가구수는 <표Ⅱ-1-1>에 의하며, 결정도에 <그림Ⅱ-1-1>과 같이 표기한다.
- ② 점포주택의 허용 및 불허에 대한 용도별 구분은 다음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그림Ⅱ-1-2>와 같다.

<그림Ⅱ-1-1> 단독주택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블록번호		R-1		용도 및 블록번호 : R-1 블록
용적률	최고층수	200%	3	용적률 : 200% 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60%	-	건폐율 : 6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최저층수 : -

<표 II -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점포주택은 15m 이상의 도로에 장변이 면한 블록에 한하여 허용한다.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참조) ※ 근린생활시설은 1층 또는 지하층에 한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 이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3층 (1층 전체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4층까지 허용)
최저층수		-
1획지당 가구수		3가구 이하
해당블록		R-1 ~ R-63

< 그림 II -1-2> 단독주택용지 용도별 구분도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3 조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제 4 조 (건물의 전면방향 및 배치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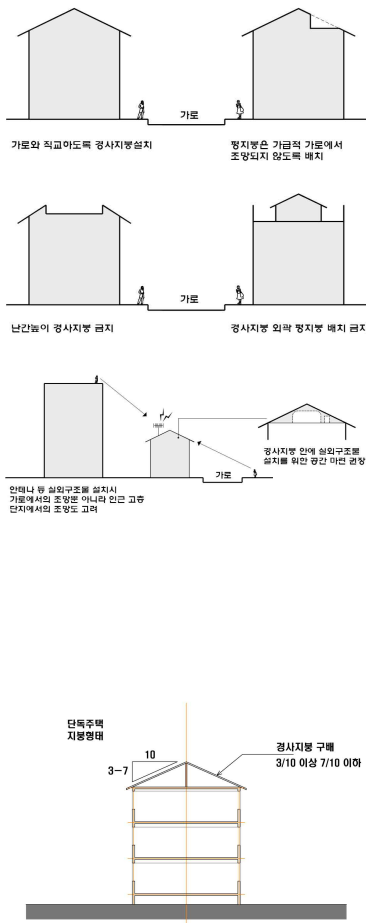
- ① 건축물 배치 시 경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일자형 배치는 지양토록 권장한다.
- ②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 등을 고려하여 남향, 동향, 동남향 배치를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을 설치토록 한다.
- ③ 건축물 벽면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가로 방향과 일치토록 권장하며, 가각에 접한 대지는 접한 모든 도로의 벽면방향과 일치토록 한다.
- ④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1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변경)

제 5 조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변경없음)

- ① 높이 차이가 심한 개구부의 설치, 서로 조화되지 않는 형태의 개구부 배열,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 ② 점포주택 1층에는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1층 바닥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cm 이내로 한다.
- ③ 점포주택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1/2 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1층에 필로티구조로 주차장 활용시에는 수직이동공간 및 관리공간을 제외한 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이동공간 및 관리공간의 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1/4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부속설비(FRP 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이 가능하다.

<그림 II -1-3> 지붕조성 예시



제 6 조 (지붕 및 옥탑) (변경)

- ①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의 2/10 이내에서 허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3/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난간높이와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구배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기정)
 3.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 모임식, 우진각 등 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구배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하며, 각각부 위치한 지붕구배는 인접획지와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변경)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 7 조 (담장 및 대문)(변경없음)

- ①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되 높이는 1.8m 이하로 하며 각각부에 설치를 금지한다.
- ② 담장은 자연소재를 활용한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③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④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 8 조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변경없음)

-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②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은 '제5편 제9장 (색채 경관), 제10장 (옥외 광고물 경관), 제13장 (야간 경관)'의 규정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9 조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제 10 조 (대지내 조경)

- ①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1 조 (차량출입구)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②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주차장 설치기준)

- ①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가구당 1.42대 이상과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한다.
- ②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기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3 조 (기타사항)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 2 장 공동주택용지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4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결정된 획지는 획지당 하나의 사업단위로 개발하며, 둘 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변경)

제 15 조 (건축물의 용도)

- ① 공동주택용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②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제 16 조 (주택규모의 지정) (변경없음)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가 지정된 경우 지정규모 이외의 규모로 건축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a) : 85㎡ 이하
2. 분양주택 (b) : 지정 주택규모 없음

제 17 조 (건축물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변경)

- ① 각 주택단지는 주택규모 및 세대수에 대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표Ⅱ-2-1>에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 ② 개발계획 승인 후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주택단지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③ 주택의 유형과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지침 내용은 결정도에 <그림Ⅱ-2-1>과 같이 표기한다.

〈그림 II -2-1〉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단지번호		A-1		=	
용적률	최고층수	250%	25		
건폐율	평균층수	50%	20		

- 용도 및 단지번호 : A-1 블록
 - 용적률 : 250% 이하
 - 건폐율 : 50% 이하
 - 최고층수 : 25층 이하
 - 평균층수 : 20층 이하

〈표 II -2-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구분			대지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분양면적 (㎡)	평균층수 (층)	최고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유형	블록명	주택규모	기정	변경								
합계			146,378	146,297.7	3,470	9,821	-	-	-	-	-	-
아파트	A-1	소계	24,373	24,372.2	694	1,964	-	20	25	50	250	-
		85㎡ 이하	16,373	16,372.2	512	1,449	80	20	25	50	250	분양주택
		-	8,000	8,000.0	182	515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A-2	-	47,309	47,309.0	1,078	3,051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A-3	-	39,138	39,058.5	890	2,519	110	20	25	50	250	임대주택
	A-4	-	35,558	35,558.0	808	2,287	110	20	25	50	250	분양주택

※ 1) 평균분양면적 및 A-1블록의 임대, 분양간 대지면적은 세대수 등 계획지표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 사항임.

제 18 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변경없음)

①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 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19 조 (건축선)

- 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②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③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외곽 경계 중 모퉁이변 건축한계선 공간은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 20 조 (주거동의 높이 및 배치)

- ① 저층(12층 이하)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 그리고 지정된 층수는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제1편 제1장 제10조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을 따른다.
- ②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군산 미장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저감방안에 포함된 단지에서는 소음저감대책에서 제시하는 직각배치구간 및 층고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21 조 (주거동 1동의 길이)

주거동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경우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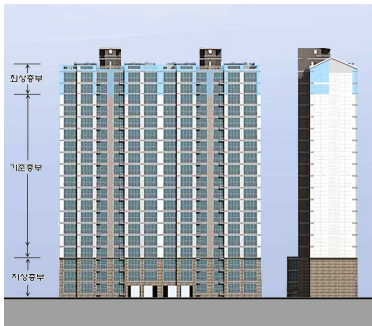
1. 15층 이하 부분 : 80미터 이하
2. 16층 ~ 20층 부분 : 60미터 이하
3. 21층 이상 부분 : 40미터 이하

제 22 조 (동일 주거동내 층수변화)

- ① 15층 이하의 주거동 중 같은 층수의 연속된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아파트는 낮은 층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10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층수변화로 인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벽면은 입면디자인을 통하여 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 23 조 (입면의 구성)

<그림 II -2-2>
16층 이상일 경우 입면구분 예시



- ① 주거동은 <표II-2-2>의 기준에 따라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② 주거동 입면변화의 기준

<표 II -2-2>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에서부터 3개층
15층~9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에서부터 3개층
8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에서부터 2개층

제 24 조 (피로티)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며 피로티 구조에 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1조 제4항 (피로티 구조)’의 규정을 따른다. 단, 4호 이내의 주거동에 피로티 구조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② 지붕형태를 박공, 방형(우진각), 원형 등으로 다양화 하고 아치형이나 돔형 등으로 건물의 상징성을 강조하여, 도시의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 ③ 슬라브형 평지붕 설치시 지붕 전체 면적의 5/10 이내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④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림 II -2-3〉 지붕조성 예시



제 26 조 (담장)

- ①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2. 공원에 면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토록 한다.

제 27 조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9장 (색채 경관), 제10장 (옥외광고물 경관), 제13장 (야간 경관)’의 규정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28 조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주택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보행쉼터를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한다.

제 29 조 (공개공지)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제 30 조 (공공조경)

- ①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2조의 제③항 (공공조경)’의 규정에 따르며, 공원 또는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한다.
- ②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과 ‘군산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차량출입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한다.

제 31 조 (단지내 조경)

- ①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보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단지내 녹지는 인근 공동주택을 비롯해, 주변 공원 및 녹지가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 ③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④ 녹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2. 공원 및 완충녹지 주변 녹지 : 공원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3.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4.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⑤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를 한다.

제 32 조 (공공보행통로)

- ① 결정도에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2조 제④항 (공공보행통로)’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② 가로물매는 최소 1.5%, 최고 5%로 하며, 2%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③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될 수 있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④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 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하되, 공공보행통로의 방향성 및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33 조 (차량출입구)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②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 자 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T’ 자 교차를 허용하며 서로의 가감속차로가 겹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다.

제 34 조 (단지내 도로)

- ①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②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③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제 35 조 (주차장 설치기준)

- ①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용,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 36 조 (단지내 도로포장)

- 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②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제 37 조 (단지내 보도포장)

- ①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② 단지내 보도포장은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 기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38 조 (기타사항)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 부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 3 장 근린생활시설 ·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39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 ①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한지계획에서 결정된 획지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한다.
- ② 획지의 분할은 분할에 따른 각각의 획지가 최소규모(근린생활시설용지 330㎡, 준주거용지 400㎡) 이상을 만족하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의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획지의 합병은 두 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하며, 획지를 합병할 때 지침내용의 적용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40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

- ① 건축물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는 근린생활시설용지 <표Ⅱ-3-1> 및 준주거용지 <표Ⅱ-3-2>에 의하며, 결정도에 <그림Ⅱ-3-1>, <그림Ⅱ-3-2>와 같이 각각 표기한다.
- ② 당해 토지가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 법규에 따른다. 특히 미관지구에 해당할 경우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그림Ⅱ-3-1>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블록번호		NC-1		용도 및 블록번호 : NC-1 블록 용적률 : 200% 이하 건폐율 : 5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2층 이상
용적률	최고층수	200%	5	
건폐율	최저층수	50%	2	

주1)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건축높이지정구간에 해당하는 필지는 최저층수 및 최고층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높이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만 한다.

〈표Ⅱ-3-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NC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통신용철탑 설치 불허) • 주거용도 1개층에 한해 허용	• 경찰파출소·지구대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최저층수	2층	—
	해당블록	NC-1 ~ NC-42	NC-43

주1)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주2)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건축높이지정구간』에 해당하는 필지는 최저 및 최고층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높이(16m~19m) 범위 내에서 건축하여야만 한다.

〈그림Ⅱ-3-2〉 준주거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블록번호		CE-1		용도 및 블록번호 : CE-1 블록
용적률	최고층수	400%	7	용적률 : 400% 이하
건폐율	최저층수	60%	2	건폐율 : 60% 이하
				최고층수 : 7층 이하
				최저층수 : 2층 이상

〈표Ⅱ-3-2〉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변경없음)

구분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E	
	허용용도	•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71조 제1항 제6호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불허용도 외의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해 허용)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해 허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에 한해 허용) • 발전시설 •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최저층수	2층	
	해당블록	CE-1 ~ CE-5	

주1)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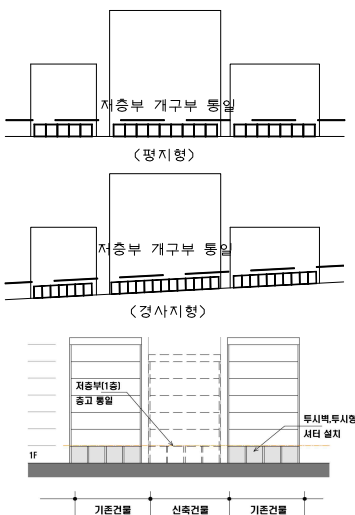
제 41 조 (건축선)

- ①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②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제 42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그림 II -3-3>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제 43 조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주변의 여건상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불가피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준주거용지의 도로변 건축물 1층 층고는 4 ~ 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4 조 (건축물의 외관)

- ①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1/2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④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⑤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제 45 조 (담장 등)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 46 조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①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10장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②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8장 (건축물 경관), 제9장 (색채경관), 제12장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47 조 (대지내 공지)

-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2장 제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②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48 조 (차량출입구)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②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49 조 (주차장 설치기준)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③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④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 50 조 (기타사항)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 4 장 상업용지(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5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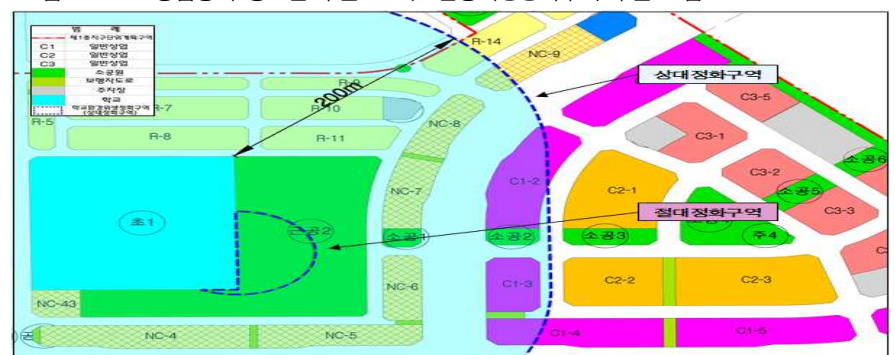
- ①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 한지계획에서 결정된 획지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한다.
- ② 획지의 분할은 분할에 따른 각각의 획지가 최소규모(간선부 상업용지 500㎡, 이면부 상업용지 400㎡) 이상을 만족하고 차랑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의 차랑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③ 획지의 합병은 두 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하며, 획지를 합병할 때 지침내용의 적용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넓은 획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획지의 시행지침을 적용하며, 획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52 조 (건축물의 용도)

- ①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을 기준으로 각 구역별 허용, 권장, 불허용도를 제시하며, 세부 용도별 구분 및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그림Ⅱ-4-1>, <표Ⅱ-4-1>과 같다.
- ② 당해 토지가 ‘학교보건법’ 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야 하며, 미장초등학교로 인해 해당되는 상업용지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은 <그림Ⅱ-4-1>과 같다.

<그림 Ⅱ-4-1> 상업용지 용도별 구분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구분 포함)



<표 II -4-1>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간선부	이면부	
용 도		C1	C2	C3
블 록		C1-1 ~ C1-6	C2-1 ~ C2-3	C3-1 ~ C3-6
영업 및 판매 시설군	위락시설	X	X	○
	판매시설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 당해용도상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 제외
	숙박시설	X	X	X
문화 및 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	○
	종교시설	X	X	X
	운동시설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	X	X	X
산업 시설군	운수시설	X	X	X
	공장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에 한함	◇ 주차장에 한함	◇ 주차장에 한함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창고시설	X	X	X
교육 및 의료 시설군	교육연구시설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 직업훈련소 및 학원에 한함
	노유자시설	X	X	X
	수련시설	X	X	X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주거 및 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업무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산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산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산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기타 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장례식장	X	X	X

주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권장), X: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의 경우 주상복합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불허용도임.

주3) 상업용지 내 위락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주4)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제 53 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 ①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다음 <표Ⅱ-4-2>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규제내용을 결정도에 <그림Ⅱ-4-2>와 같이 표시한다.
- ③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계 법규에 따른다.

<그림Ⅱ-4-2> 일반상업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블록번호		C1-2		- 용도 및 블록번호 : C1용도 상업용지 중 2번블록 - 용적률 : 600% 이하 - 건폐율 : 70% 이하 - 최고층수 : - - 최저층수 : 2층 이상
용적률	최고층수	600%	-	
건폐율	최저층수	70%	2층	

<표Ⅱ-4-2> 일반상업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일반상업용지
도면표시		C1~C3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2층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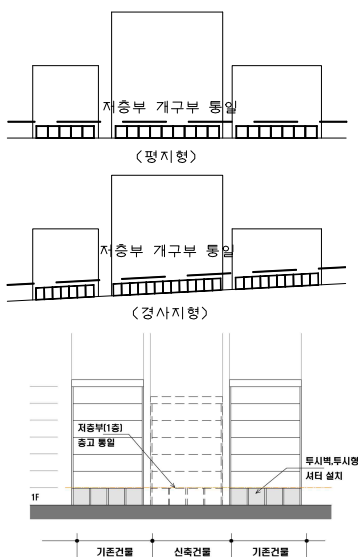
제 54 조 (건축선)

- ①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② 건축선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고객을 위한 서비스시설(조경, 파고라, 휴게의자, 지하설비구조물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배치를 불허한다.

제 55 조 (건축물의 전면방향)

둘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가각에 접한 대지의 경우 건물의 전면은 접한 모든 도로를 향할 수 있다.

<그림 II -4-3>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제 56 조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및 층고)

- ①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단, 주변의 여건상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불가피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대로급 이상의 도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 ~ 4.5m 내외를 권장하며, 좌우 양측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평균 층고와 높이를 권장한다. 단, 경사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건축위원회 및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 (건축물의 외관)

- ①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3/5 이상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다만, 위락시설 등 건축물의 용도특성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반사성 금속, 반사성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금한다.
- ③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④ 상업용지 건축물에서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 노출되는 외벽은 외벽면의 50% 이상을 투시형 또는 벽면녹화로 조성하여, 공원 및 보행자도로에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하도록 한다.

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⑥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⑦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제 58 조 (담장 등)

①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② 당해 건물로부터 인접대지까지의 측면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 측면이격공지의 전면 부분에는 식재 등 조경시설이나 1층 높이 이상의 담장 또는 지하층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담장이나 지하층 출입구는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색깔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이격거리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면이격공지 전면 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한다. 단, 측면공지가 주차통로로 활용될 경우 통로 부분은 제외한다.

제 59 조 (건축물의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① 건축물 입면 디자인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며,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10장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②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8장 (건축물 경관), 제9장 (색채경관), 제12장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1 조 (대지내 공지)

-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일반상업용지 중 공원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건축한에 의한 전면공지는 공원 및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하여 공연, 전시, 노천카페 등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 ③ 공개공지의 확보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준용하고 ‘제1편 제1장 제12조 제2항 (공개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2 조 (차량출입구)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②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주차장 설치기준)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연접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과 일체형 또는 연결 통로를 조성하여 지하주차장을 공동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③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④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조업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⑤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하며,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 시계 구간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며, 이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0.1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 60 조 (기타사항)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 부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 5 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제1절 일반시행지침(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61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기본단위로 하며,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제 62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①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결정도에 지정된 규모 이하로 한다.
- ②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규제내용을 결정도에 <그림Ⅱ-5-1>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Ⅱ-5-1>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지침내용 도면 표시 예시도

용도 및 블록번호		P2-주3		=	용도 및 블록번호 :	
용적률	최고층수	640%	8		P2 주차장용지 중 주3번블록	
건폐율	최저층수	80%	-		- 용적률 : 640% 이하	
					- 건폐율 : 80% 이하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	

< 건축선 및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제 63 조 (건축선)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제 64 조 (건축물의 배치)

- ① 학교시설은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② 근린공원변 시설은 외부공간이 공원과 일체형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가급적 도로변으로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

제 65 조 (건축물 외관)

- ① 공공청사는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한다.
- ② 종교시설은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③ 건축물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④ 건축물의 상부는 주변 건축물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며, 공공청사 건축물은 옥상 녹화를 하도록 권장한다.
- ⑤ 건축물의 경관, 색채,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5편 제8장 (건축물 경관), 제9장 (색채경관), 제12장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제 66 조 (담장)

- ① 공공시설용지내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②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③ 주유소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④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 3(그리심교회)은 제4호 근린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담장을 설치하되,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담장 등으로 설치토록 한다.〈신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67 조 (대지내 공지)

- ①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의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②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③ 근린공원변 시설의 외부공간은 공원과 동일한 식재를 하는 등 공원과 일체화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68 조

- ①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허용된 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②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④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

제 69 조 (주차장 설치기준)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군산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②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③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m^2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④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노외주차장에는 대지면적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존치 건축물인 종교시설(그리심교회)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주차대수 8대 및 환지토지를 감안한 주차대수 20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28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 기타에 관한 사항 >

제 70 조 (기타사항)

생태환경도시 조성, 무장애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제3편 환경부문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제2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별 시행지침(변경)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용지에 관한 사항 > (변경)

제 71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①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한다.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5-1>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③ 주차장건축물의 형태 및 옥외광고물은 상업용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단, 주차장 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는 주차장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하도록 한다.

<표Ⅱ-5-1> 자동차관련시설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건축물	도면표시	P1	P2	P3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¹⁾)		
건폐율		—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	64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8층	5층
해당블록	기정	주1, 주2, 주4 ²⁾	주3, 주5	주6 ~ 주11
	변경	주1, 주2, 주4 ²⁾	주3, 주5, 주12	주6 ~ 주11

- 1)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타 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2) 지하주차장4를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한다.

<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제 72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5-2>를 초과할 수 없다.

<표Ⅱ-5-2> 공공청사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공공청사		
		주민센터	세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O1	O2	O3
	허용용도	• 주민센터 및 부속용도 (복합용도로 공공복지 및 문화시설 포함)	• 세무서 및 부속용도	•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및 부속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공청1	공청2	공청3

< 교육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제 73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건축물 용도는 <표Ⅱ-5-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표Ⅱ-5-3> 교육시설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교육시설
		초등학교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1
	허용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초1

제 74 조 (차량출입구)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한다.

제 75 조 (조경)

- ① 가급적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근린공원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공원과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제 76 조 (보행자 동선)

- 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근린공원과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제 77 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 ①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에 한한다. 다만,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V (건축물 등의 제한 등)’에 의한 용도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유소 및 부대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③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5-4>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표Ⅱ-5-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H1
	허용용도	• 주유소 및 부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해당블록		주유1

제 78 조 (차량출입구)

주유소는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 종교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제 79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5-5>를 초과할 수 없다.

<표Ⅱ-5-5> 종교시설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D1
	허용용도	•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 (납골당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변경	• 5층이하, 종탑포함 25m 이내로 제한
해당블록	변경	종1 ~ 종3

제 80 조 (지붕 및 종탑)

- ① 종교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한다.
- ③ 종탑에 부착되는 간판 및 종교상징물은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 조명방식으로 설치한다.

<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제 81 조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① 건축물 용도는 <표Ⅱ-5-6>에 한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한다.
- ②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최고한도는 <표Ⅱ-5-6>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표Ⅱ-5-6> 공급처리시설용지의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공급처리시설
		유수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Z1
	허용용도	• 저류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저1 ~ 저2

제 3 편 환경부문 시행지침 (권장)(변경없음)

제 1 장 생태환경도시 조성계획 (권장)

제 1 조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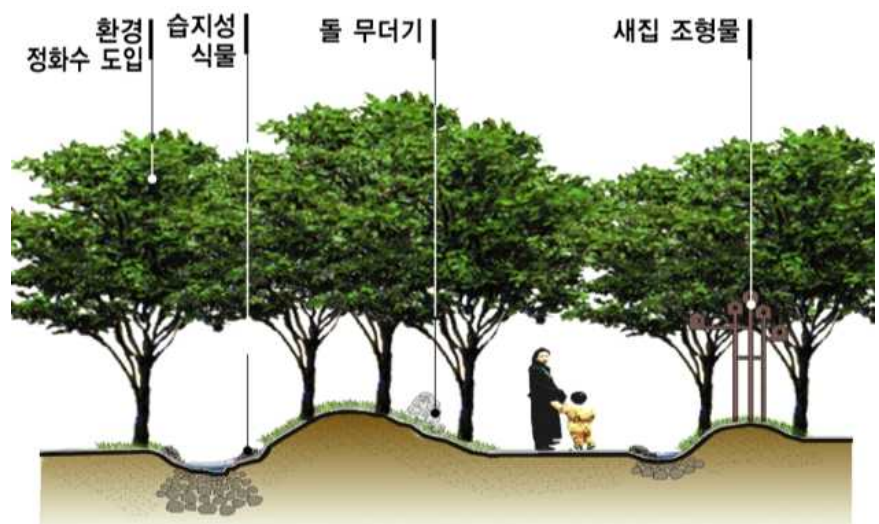
- ① 군산 미장지구를 저탄소 도시로 구현할 수 있도록 탄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탄소흡수를 위한 계획기법을 활용한다.
- ②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 ③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한다.
- ④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가능한 한 녹화한다.
- ⑤ 대기의 순환을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람길을 활용한다.
- ⑥ 대기오염방지와 쾌적한 통행을 위해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한다.

< 공동주택용지 >

제 2 조 (보행녹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녹도를 단지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되도록 조성한다.

<그림Ⅲ-1-1> 보행녹도 단면 예시도



제 3 조 (바람길)

- ① 공동주택용지내에 녹지와 물, 오픈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바람길을 조성한다.
- ② 지형이 평평한 경우에는 주풍향 방향으로 바람길을 확보한다.
- ③ 주변에 수림이 조성된 산지 또는 언덕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상과 능선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바람길을 확보한다.

제 4 조 (생태연못(비오톱))

- ① 공동주택용지내 생태연못을 설치한다.
- ② 생태연못(비오톱)은 단지내 빗물저장시설을 활용한 우수와 중수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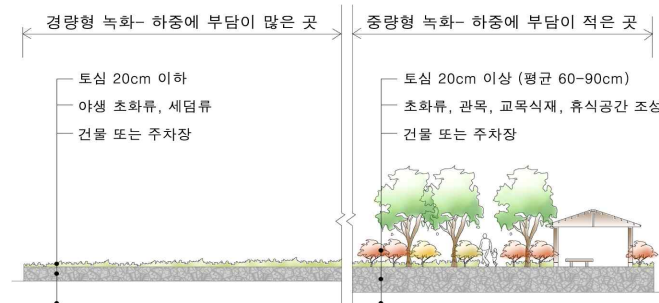
<그림Ⅲ-1-2> 생태연못 조성예시



제 5 조 (옥상녹화)

노인정, 유치원, 관리사무소 등에 지피식물 및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옥상녹화를 한다.

<그림Ⅲ-1-3> 인공지반 특성별 옥상녹화 예시도



<그림Ⅲ-1-4> 옥상녹화 조성예시



제 6 조 (실개천)

- ① 실개천은 생태형과 인공형을 적절히 절충하여 설치하되, 생태형의 경우 토양침투로 인한 유량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입수부 및 출수부 변에는 15㎡ 이상의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일시저류한 후 입수 또는 출수하도록 한다.
- ③ 실개천의 수질 유지를 위하여 실개천 중간 및 입·출수부 인근에 오염된 물이 생태수로 출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실개천의 경로는 대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다.

<그림Ⅲ-1-5> 실개천 조성 예시도



제 7 조 (생태면적률)

- ①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um(\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 ③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한다.

< 상업·준주거·근린생활시설용지 >

제 8 조 (신·재생에너지활용)

-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총건축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활용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②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교육시설, 공공청사용지 >

제 9 조 (신·재생에너지활용)

- 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총건축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②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③ 공원, 관공서, 주차장 등 밝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의 야간조명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운영한다.

제 10 조 (생태면적률)

- 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um(\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 ③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확보한다.
- ④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 건축물의 경우 전체 벽면길이의 25% 이상의 구역에 대해 벽면녹화를 한다.

< 기타 시설 >

제 11 조 (구조물)

- ① 수변공간 및 공원에 이용되는 교량·계단·기타 도입시설은 석재 및 목재 등의 친환경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 ②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의 30% 이상의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에서 조망되는 면을 덩굴식물로 녹화한다.

제 2 장 무장애도시 조성계획 (권장) (변경없음)

< 총론 >

제 12 조 (정의)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란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애(또는 차이)를 느끼지 않는 도시”를 말하며 “편의 시설이 없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시”를 의미한다.

< 도시 및 건축경계 >

제 13 조 (도로와 건축의 경계)

- ① 도시 및 근린가로와 건축과의 경계사이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며, 보도와 건축과 만나는 지점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단, 계단+경사로 방식은 피한다.
- ② 배수의 문제로 수평접근이 힘든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로 경계부분을 처리한다.
- ③ 경사진 지형일 경우 경사로의 수평침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 이동되는 연결통로를 확보한다.

제 14 조 (주차장과 건축의 경계)

주차 후 보도나 건물로의 이동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무리 없이 다니는 보행로를 확보해주며 심리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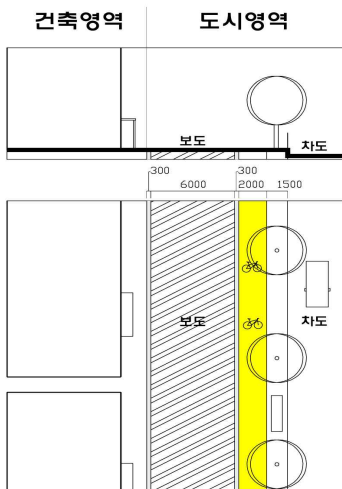
제 15 조 (보행전용공간과 건축의 경계)

- ① 건물로의 진입시 수평이동이 되도록 하며, 경사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심리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② 보행전용공간에서 건축물로 진입시 보행전용공간의 레벨을 건축물과 평행하게 처리하여 이용상 편의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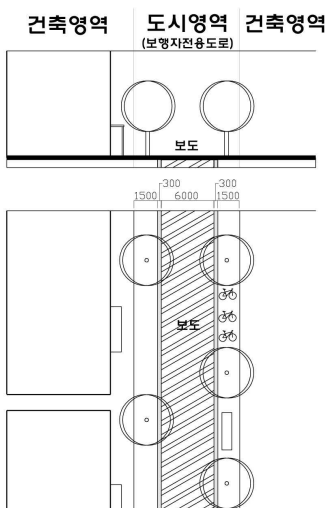
<그림Ⅲ-2-1> 무장애도시 조성예시



<그림Ⅲ-2-2> 도시와 건축경계



<그림Ⅲ-2-3> 보행공간과 건축경계



<그림Ⅲ-2-4>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



< 건축물 >

제 16 조 (내부시설)

- ① 출입구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수평 손잡이로 설치한다.
- ② 복도 바닥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되며, 설치시 경사로로 설치한다.
- ③ 계단은 철판을 반드시 설치하며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④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안내 및 유도시설 >

제 17 조 (점자블럭)

- 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녹지와 도로색의 대비를 통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유도한다.
- ② 보행로와 차도의 경계표시는 단순한 띠나 난간 모양 외에도 잔디, 가로수 등 녹지대로 형성되는 경계구역으로 만들며,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 뿐 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③ 보행유도시 바닥 재질을 다르게 하거나 발아래조명을 이용하여 보행을 유도한다.
- ④ 주출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안내판, 계단·화장실, 승강기의 호출버튼, 에스컬레이터, 판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안전지대와 경계부분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제 18 조 (음향신호기)

- ① 주요시설의 출입구에는 유도벨 또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 ②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

제 19 조 (바닥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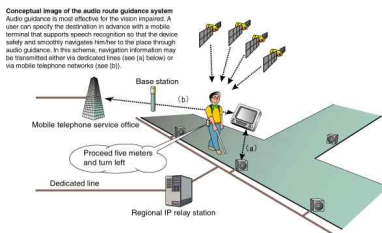
<그림Ⅲ-2-5> 안내표시 예시



제 20 조 (안내표시)

- ① 안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입간판 형태로 운전자가 쉽게 보도록 하단 높이는 250c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 ②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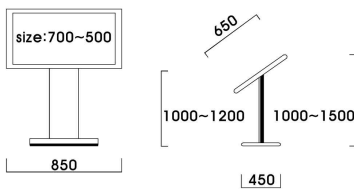
<그림Ⅲ-2-6>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제 21 조 (점자 및 촉지도안내판)

- ①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에 있도록 수직으로 설치한다.
- ②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그림Ⅲ-2-7> 촉지도안내판 규격 예시



제 22 조 (피난시스템)

- ①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며, 건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② 피난 · 경보 설비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제 23 조 (게시판)

교통시설로 긴급 시 임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제 3 장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권장) (변경없음)

< 총론 >

제 24 조 (정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고도 하는 안전도시 개념은 거주자가 그 공간을 통제하도록 주거환경에 실제적, 상징적 방어물이나 영향력, 감시기회 등을 확대시켜 놓은 공간으로, 경찰력을 통한 안전유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다.

< 상업 · 준주거 · 근린생활시설용지 >

제 25 조 (배치형태와 외관)

- ① 상업건물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배치하고, 저층부는 내부를 공개하는 용도의 상점을 입점시켜 개방을 통한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건물 저층부의 경우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문이나 게시물 부착을 금지한다.

제 26 조 (색채 및 조명)

- ① 상업 · 준주거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과도한 원색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색채로 설치한다.
- ② 상업건물의 개방된 저층부 내부 조명과 간판 조명을 이용하여 가로등과 조화를 이루어 보행가로의 조도를 높인다.

제 27 조 (대지내 공지)

상업 · 준주거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공지를 공터로 남겨 두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 방범한다.

<그림Ⅲ-3-1> 상업시설의 영역성 확보



<그림Ⅲ-3-2> 시야를 확보한 광고물 설치



< 공동주택용지 >

제 28 조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보도의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변 저층 주호에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동배치를 유도한다.

제 29 조 (색채 및 조명)

- ①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을 피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을 사용한다.
- ② 밤에도 물체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한다.

제 30 조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영역의식을 강화하도록 소규모공원, 광장의 설치 및 휴게시설, 놀이시설 설치, 공터를 줄여 방법한다.

<그림Ⅲ-3-3> 1층 정원을 통한 공간확보



<그림Ⅲ-3-4> 자연감시가 가능한 놀이시설 설치



제 31 조 (보도 등 시설물)

- ① 외부로의 개방된 출구를 최소화하여 범죄 예방을 유도한다.
- ② 시야가 가리는 주동 양 끝 등에는 나무를 심거나 다른 부속건물을 짓는 등의 시야가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각적으로 폐쇄되는 옥내공간을 최소화한다.
- ③ 후미진 장소는 울타리를 치거나 각종 식물을 심어 정원으로 바꾸도록 한다.
- ④ 사람의 활동이 빈번한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며, 큰 수목으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한다.

<그림Ⅲ-3-5> 조경을 활용한 시야확보



< 단독주택용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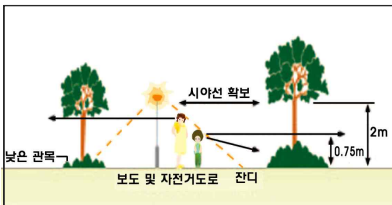
제 32 조 (건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그림Ⅲ-3-6> 대지내 공지를 볼수 있는 개방된 구조 배치



- ① 외부에서 대지내 공지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배치한다.
- ② 건축물 공간의 성격을 공적영역, 반공적영역, 사적영역, 통로지역을 명확히 계획하고 출입구는 개방된 구조로 한다.
- ③ 공공보도와 주호의 접근로를 구분하기 위해 낮고 상징적인 벽을 형성한다.
- ④ 근린생활시설의 상업용도로 쓰이는 경우,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문이나 게시물의 부착을 금지하고 계산대는 상점 밖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⑤ 건물에서 도로의 전망이 보이도록 하고 모퉁이와 사각이 적도록 차폐녹지와 시설 녹지를 설치한다.

<그림Ⅲ-3-7> 시각적 감시가 가능한 조명



제 33 조 (색채 및 조명)

- ①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피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색을 사용한다.
- ②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킨다.

제 34 조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주민들의 영역의식을 강화하도록 소규모공원, 광장의 설치 및 휴게시설, 놀이시설 설치, 공터를 줄여 방법한다.

제 35 조 (보도 등 시설물)

- ① 사용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색과 패턴을 사용하고 보도 폭을 넓힌다.
- ② 사람의 활동이 빈번한 곳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며, 개방적인 놀이공간으로 한다.
- ③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킨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제 36 조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공공시설은 보행가도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도에 향하게 한다.

제 37 조 (색채 및 조명)

- ① 학교나 공공시설은 미색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도한다.
- ② 공공시설의 경우 야간활동이 거의 발생치 않으므로 가로등, 버스정류장, 가로 편익시설들을 이용한 가로 조명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38 조 (대지내 공지)

공공시설용지의 공지를 공터로 남겨 두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 방법한다.

제 39 조 (보도 등 시설물)

- ① 가로등에 방법등을 추가로 증설한다.
- ② 버스정류장, 가로 편익시설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도록 가로 시설물에 대한 색채·형태 디자인을 고려한다.
- ③ 사용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색과 패턴을 사용하고 보도폭을 넓힌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제 40 조 (색채와 조명)

- ①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킨다.
- ②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법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한다.

제 41 조 (대지내 공지)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를 공터로 남겨 두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 방법한다.

제 42 조 (보도 등 시설물)

- ①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한다.
- ②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키고, 통과 보행량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④ 버스정류장이나 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방법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⑤ 사용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색과 패턴을 사용하고 보도폭을 넓힌다.

제 4 편 공공부문 시행지침 (변경)

제 1 장 도로시설(변경없음)

< 가로변 식재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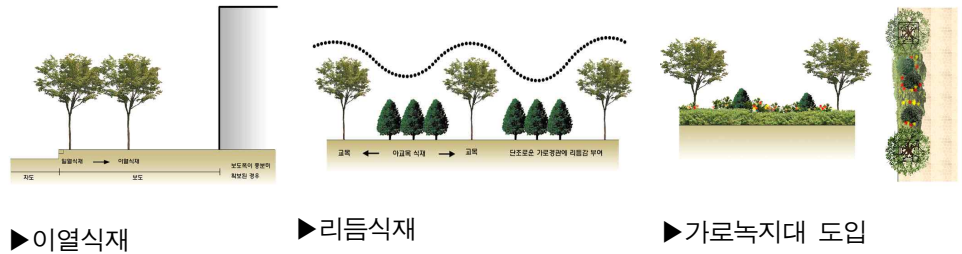
제 1 조 (가로수 식재 기본원칙)

-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30m 이상 도로로서 보도폭 2.0m 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6~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로수 식재 후 수목보호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철제 지주대 또는 지주목을 설치한다.
- ④ 간선도로를 따라 상징수와 상징화를 식재하거나, 구간별 주제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1. 상징가로 : 문화 및 예술성의 상징과 이벤트가로로서 역할수행 및 녹음을 제공할 수 있는 수종
 2.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거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회화나무길, 이팝나무길, 툼리나무길, 느티나무길 등)

제 2 조 (가로수 식재방법)

- ①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 및 택시 정차대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②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 보호대를 폭 1~2m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을 조성한다.
- ③ 특화가로변 식재는 가로수의 열식에 의한 단순한 식재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식재방식 도입을 위하여 2열식재, 리듬식재도입, 하부식재 및 가로녹지대 개념 등을 도입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식재공간을 연출하도록 한다.

<그림Ⅳ-1-1> 상징가로변 식재예시



▶이열식재

▶리듬식재

▶가로녹지대 도입

제 3 조 (중앙분리대 식재)

- ① 가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통과기능 위주의 가로구간에 위치한 중앙분리대는 내공해성이 강한 수종이나 환경정화수종을 도입한다. (가중나무, 은행나무, 중국단풍 등)
- ② 주거지와 인접한 가로구간의 중앙분리대는 관목류 위주의 식재 패턴을 도입한다.
- ③ 기본적으로 마운딩 후 잔디를 식재하고 소교목으로 요점식재를 하거나 화관목 등을 군식하여 쾌적한 도로분위기를 연출한다.

제 4 조 (기타구간 식재)

- ① 버스 및 택시 정차대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 ②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인이 도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수종, 식재간격 등을 변화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군산 미장지구 주진입부, 주요 공공시설 입구부 등 인식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에서는 화관목을 대규모로 밀식하거나, 향토수종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우수배수시스템의 도입)

- ① 도로의 중앙분리대형 가로수의 경우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다.
- ② 도로옆의 가로수에 우수배수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적으로 식생이 서식하도록 하며, 가로수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로변 포장에 관한 사항 >

제 6 조 (포장원칙)

-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있는 재료가 선정되어야 하며,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 ②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의 배치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 (차도포장)

- ①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보차혼용도로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거친 재질을 이용하여 서행 운전을 유도하고 보행특성에 따라 포장재료의 질감을 다르게 한다.
- ③ 버스전용차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 스쿨존 등 시인성 제고가 필요한 구간은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록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차량소음이 큰 구간의 차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차도 자체 흡음 능력을 지닌 저소음 다공성 포장재(다공성 아스팔트 포장)로 포장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제 8 조 (보도포장)

- ① 대로변 보도는 가로수 식재 간격인 6~8m를 기본 모듈로 한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시각적 흥미유발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 위계별, 장소별 특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② 군산 미장지구의 진입부, 상업지역, 생활가로, 결절부, 학교 주변지역 등의 일정 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한다.
- ③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군산시의 상징문양 및 로고 등을 포함하여 군산 미장지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록과 턱없는 경계석을 설치한다.
- ⑤ 상업용지의 보도포장은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한다.

< 자전거도로에 관한 사항 >

제 9 조 (기본원칙)

- ① 군산 미장지구내 자전거도로의 순환체계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반영된 자전거도로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공원내에서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에 의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녹지축에 조성되는 자전거도로가 공원내에서도 끊이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 ③ 차량동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대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변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일반구간에 관한 사항)

- ① 자전거도로변에 식재되는 교목은 지하고(枝下高)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② 관목은 측가지가 너무 벌어져 자전거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변의 경관제고를 위해 화관목을 군식처리 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용 포장은 투수성콘크리트 등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자전거도로 포장은 표면배수를 위한 구배를 유지하는 한편, 미끄럼이 방지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 주요 진입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단차를 배제한다.
- ⑤ 노선의 이용특성상 야간에 빈번한 이용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 (교차접속구간에 관한 사항)

- ① 자전거도로와 간선가로와의 교차부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간선도로의 자전거 횡단구간에는 자전거 형태를 도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와 차도와의 경계부에는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교차접속부에는 볼라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④ 자전거보관대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중복주차가 가능한 형태의 모델을 활용하고,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제 12 조 (기본원칙)**

- ①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및 휠체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 및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을 설치한 경우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 입지여건 및 이용특성에 따라 기능, 형태, 식재기법 등에 있어 유형별로 특화한다.
- ③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한 시설 중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오픈스페이스 요소뿐만 아니라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 향상을 위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④ 8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 내부에는 적정 간격으로 낙엽교목을 식재하여 녹음을 조성하고 휴게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활동을 지원한다.
- ⑤ 공동주택지의 경우 1개 지점 이상의 개구부를 설치하며 개구부변에 변화있는 폭의 녹지를 확보하고 휴게 및 편익시설을 배치하되, 입구 및 활동의 결절 광장부에는 경관수종을 도입하도록 한다.

제 13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식재)

- ① 보행 및 비상교통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식재하여 한다.
- ② 간선가로변으로부터의 주진입부에는 대교목을 도입하거나, 화관목을 밀식하여 입구감을 제공한다.

- ③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주변에는 꽃, 열매, 단풍 등을 갖는 낙엽활엽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는 주요 보행축을 따라 화관목을 밀식 처리하여 계절에 따른 경관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길을 조성하도록 한다.
- ⑤ 투수성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변은 식재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 ⑥ 상업·준주거용지의 식재는 상가의 전면 및 옥외광고물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고(枝下高)가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제 14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

- ①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기본으로 하되, 공간적 특화가 요구되는 입구부분, 휴게공간, 공공시설용지 연계부분 등에서는 독자적 패턴포장을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② 상업용지내 보행자전용도로의 포장재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재료, 색채 등을 사용하여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 1.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색채를 사용하고 자채도의 색을 사용하여 주변건물, 시설물 등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2.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수효과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단독주택지 내부의 보행자전용도로는 소형고압블록에 의한 전통문양, 군산시의 심볼 등을 포장패턴에 도입하거나 전통소재를 활용하여 향토적 분위기를 제공한다.
- ④ 일반도로 및 단지내도로와의 교차접속부의 험프(hump)구간 포장은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닌 차도용 소형 고압블록 또는 판석 등의 거친 질감의 포장재를 도입한다.

제 15 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설물)

- ① 상업·준주거용지내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인의 휴게, 편의를 위해 쉼터, 벤치, 보행등, 휴지통, 공중전화 등을 설치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의 주입구부분에는 차량진입 방지 및 벤치의 역할을 겸하는 블라드를 2~3m 간격으로 배치하며, 안내와 입구상징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주를 가급적 확보하도록 한다.

③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④ 조명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야간이용시 안전성을 부여하고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Ⅳ-1-1>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

조성방향	주요도입시설
- 차도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쾌적성 확보 - 보행공간내에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의 질 향상 - 보행로의 곡선화 및 다양한 휴게 및 휴식시설의 도입	보행로, 자전거도로, 실개천, 징검다리, 목교, 안내판, 열주, 파고라, 벤치 등

⑤ 가로등은 베너 설치 및 통합지주방식에 의한 다기능적 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⑥ 보행자전용도로에 설치되는 맨홀 뚜껑은 포장 패턴과 유사한 모듈을 사용하여 전체 가로경관이 하나의 패턴으로 인지 될 수 있도록 바닥포장과 일체화하도록 한다.

⑦ 재질 및 형태는 바닥포장면과 동일한 형태 및 재질을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고 맨홀의 외곽틀을 철제로 제작한다.

<그림Ⅳ-1-2> 바닥포장패턴과 일체화된 맨홀 설치 사례



⑧ 보행자전용도로 내에는 보행안전성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분전반(변압기/개폐기)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분전반은 건물의 대지내 공지에 밀집시키거나 부득이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통합식재대를 조성하여 차폐하도록 한다.
2. 분전반의 재질 및 형태는 주변 건축물 및 바닥포장, 가로시설물과 조화로운 색채 및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교차접속부 처리)

- ① 횡단보도는 주요도로의 교차접속부 및 지침도상의 지정된 장소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며, 설치간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0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② 횡단보도구간에는 휠체어와 보행자의 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경계석의 턱을 낮추어 설치하고, 시각장애자를 위한 벨신호기와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보행우선 도로의 험프의 경사도는 5~10%로 설정하며, 10cm 내외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 ④ 험프와 보도 연결횡단부는 단차 없이 설치되도록 하며,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버스정차대)

- ① 주보행동선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부나 주요 공공시설 등 기타 교통시설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군산 미장지구내 교통량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되 상업·준주거용지, 공공시설 부근의 이용인구 집중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버스정차대의 형태는 포켓형 버스정차대(Bus Bay)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버스정차대의 폭은 3m,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가속구간 12~20m, 감속구간 13~25m 확보하고, 동시정차대수 1~2대를 기준으로 한다.
- ⑤ 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세가로 입구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버스정차대에는 각종 안내시설 및 가로시설물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포켓형 버스정차대(Bus-Bay)에 인접하여 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인접된 녹지의 일부를 할애하여 벤치, 쉼터 등 보행인을 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⑧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기준을 따른다.

제 18 조 (택시정차대)

- ① 버스정차대 및 공공시설 등 주보행동선과 연계배치하여 효과적인 환승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되 버스정차대와는 일정거리를 이격하고 본선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시설물 자체가 방향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료성과 식별성을 고려하고, 형태와 색채는 주변과 대조시켜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 ③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된 기준과 상이할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기준을 따른다.

제 19 조 (통합가로시설물의 설치)

상업용지의 가로시설물은 통합디자인에 의해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 20 조 (교통시설물 및 안내시설물)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겸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가로시설물은 서로 통합하여 통합지주의 형태로 보행공간에서 가로시설물의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 21 조 (조명시설)

- ① 식재대 설치 구간의 가로등은 식재대 내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등 설치 위치를 가로수 보호덮개 중심선과 일치시켜 통일적인 가로경관 형성을 지향하도록 한다.
- ② 보행등은 가로수 사이공간에 설치하도록 하며, 가로수 보호덮개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제 2 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원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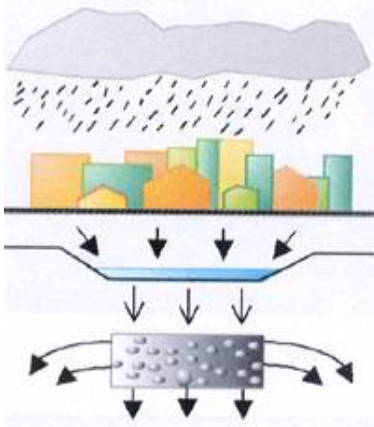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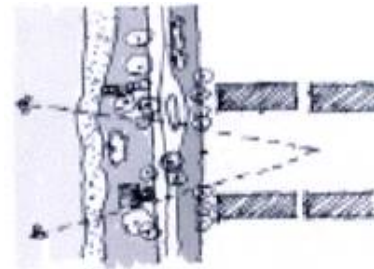
제 22 조 (공원의 분류 및 기본원칙)

- ① 군산 미장지구내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 23 조 (근린공원 조성원칙)

- ① 공원의 분포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시설을 차별화시켜 도입하여 공원 선택의 기회를 확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부,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을 기준으로 입구를 설정하되,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하여 2개 방향 이상의 진입구를 확보한다.
- ③ 공원과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연접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④ 공원별로 주요도입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되, 가급적 인접한 공원과 구분되는 경관적 특화가 되도록 한다.
- ⑤ 대규모 공원은 적극적인 식재 및 다양한 공간구성을 통해 인공적이며 단조로운 공원 경관에 변화와 흥미를 부여한다.
- ⑥ 거점 공원녹지와 녹화가로를 연계하는 등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⑦ 근린공원 1호 및 3호는 저류지를 중복결정하여 우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근린공원 4호 및 소공원 8호 내 실개천(구암방수로)는 수림대 및 초지 등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Blue Network를 형성한다.

<그림 IV-2-1> 우수저류지의 설치모습

<그림 IV-2-2>
시설물 및 도로로부터 시선확보

⑨ 주변건물, 도로축 등으로부터 공원으로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근린공원 2호는 학교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열린공간(학교숲)을 조성한다.

⑪ 근린공원 4호, 소공원 6호는 실개천과 연계하여 수변산책로를 도입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

⑫ 소공원 4호는 상업용지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제 24 조 (근린공원내 도입시설)

① 인접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집회광장, 소규모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적극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진출입구 중 입지여건이나 이용빈도가 타 입구보다 중요시되는 곳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공원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곳 중 가장 위계가 높은 장소에는 중심광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식재 부분에는 자생 향토수목을 식재하여 장소성과 향토성을 고양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단풍이나 열매가 좋은 수종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제 25 조 (어린이공원 조성원칙)

① 인근 주거시설 내에 확보될 어린이놀이터의 단순 기능 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등을 생활권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② 공원경계부는 화관목에 의한 생울타리나 마운딩으로 처리하며,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와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어린이 공원내에 충분한 녹음을 제공하고 인접 단독주택지의 주민들의 주민친화 마당의 공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어린이 공원 변두리에 녹지(가로수 및 화단)를 조성하여 친환경적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해야 한다.

< 녹지에 관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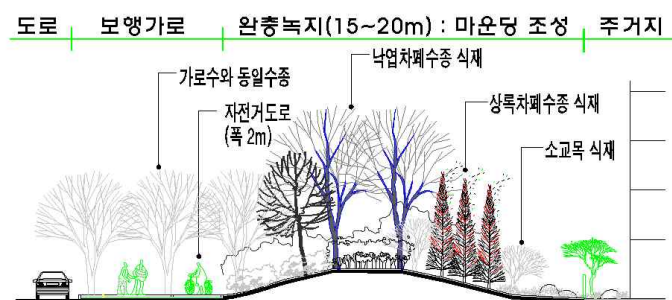
제 26 조 (녹지의 기본원칙)

노폭 30m 이상 도로로서 공동주택에 면해있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폭15m의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하며,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제 27 조 (녹지내 식재원칙)

- ① 녹지의 식재는 가로수, 공원 등 인접시설과 연계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녹지의 폭과 녹지내 인접하게 될 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 ② 녹지의 수종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군락 식재, 대교목 랜덤식재 및 상록교목군락에 의한 배경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한다.

<그림 IV-2-3> 완충녹지 조성 예시도



- ④ 가로변의 휴게소, 주차대, 결절부 등의 주변에는 느티, 단풍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 ⑤ 비록 자생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종이 아니면 자생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상지 인근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식재계획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 28 조 (녹지내 도입시설)

- ① 주요 교차지점에는 둔덕의 조성을 지양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보도 및 공원과 연계하여 벤치, 파고라,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
- ③ 결절부와 버스정차대 등 보행집분산 지점에는 벤치,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광장에 관한 사항 >

제 29 조 (광장의 구성)

- ① 광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계획방향 및 성격에 맞도록 계획 되어야 한다.

<표Ⅳ-2-1> 광장의 계획방향 및 성격

구 분	성 격	계획방향
경관광장	• 진입 (Gate) • 문화 (Culture) • 교류 (Community)	• 도시의 관문으로서의 공간, 만남의 장소 • 문화행사 및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 주변공원시설과 연계방안 확보

제 30 조 (광장 조성원칙)

- ① 보행안전성과 완충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녹지폭을 제외하고 인접지역으로 가능한 전면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 ② 광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광장부와 보도부의 지면은 접근시 무리가 없도록 평면 또는 경사로로 조성하며, 심리적 경계가 인식될 수 있도록 볼라드를 2~3m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④ 광장내부에는 적절한 식재와 수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심광장을 조성한다.

제 31 조 (광장내 도입시설)

- ① 광장의 주차장화 방지를 위해 차량경계시설을 도입하며,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등을 확충배치하도록 한다.
- ② 광장은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플랜트, 벤치, 전화부스, 보행안내, 자전

거보관소 등의 시설은 가급적 광장외곽에 배치한다.

③ 광장내 활력부여 및 휴게공간의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수경시설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④ 시민의 축제 및 회합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조명등, 열주, 깃발, 조각물 등 수직적 경관시설을 확보하도록 한다.

1. 군산시의 진입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군산시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등을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문화행사 및 소규모 공연 및 이벤트가 가능한 가변형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공공공지에 관한 사항>

제 32 조 (공공공지 조성원칙)

- ① 경관의 유지 및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② 공공공지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공공지에는 낙엽교목에 의한 녹음식재와 화관목의 밀식을 통한 경관식재로서 가로 경관을 제고하는 한편,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3 조 (공공공지내 도입시설)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긴의자, 등나무, 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생활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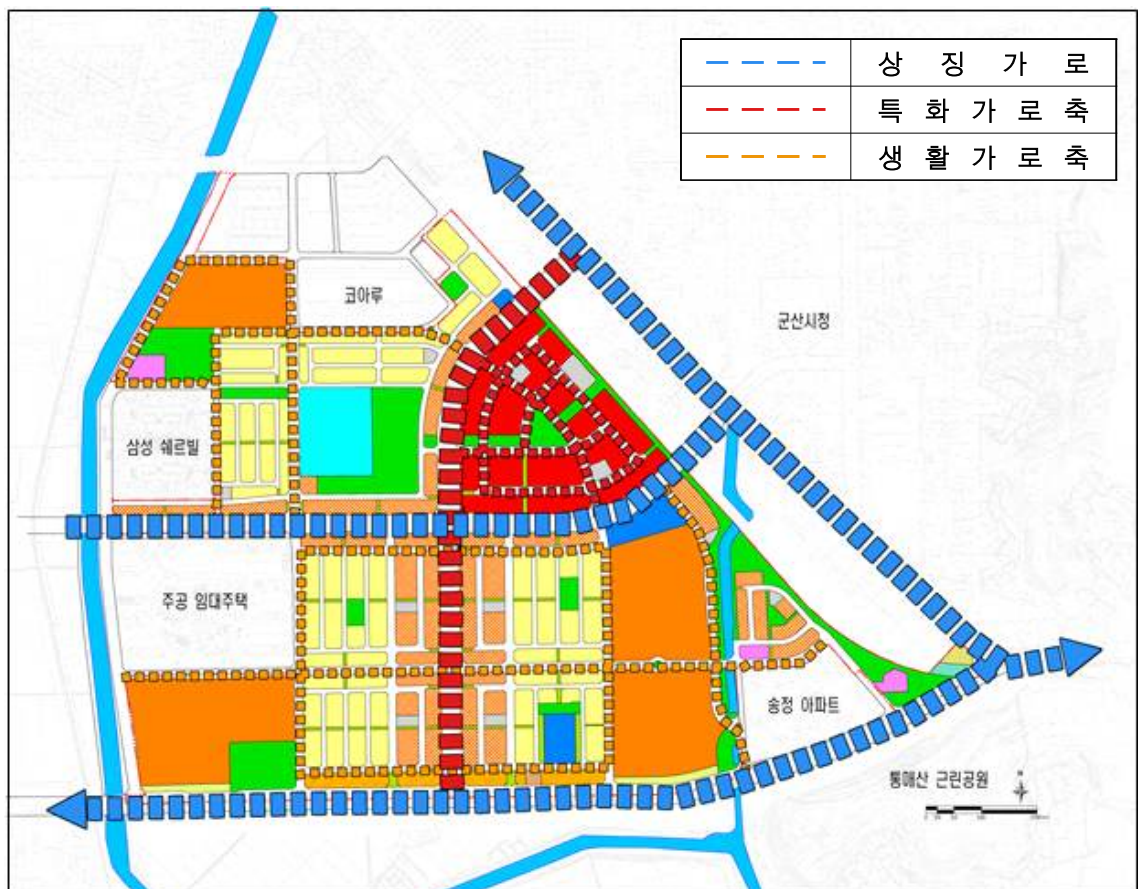
제 5 편 경관부문 시행지침(변경)

제 1 장 가로축 경관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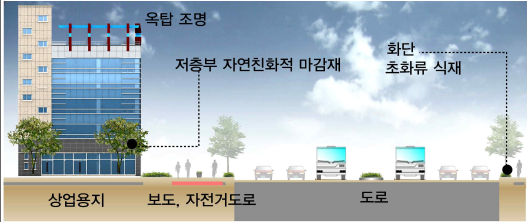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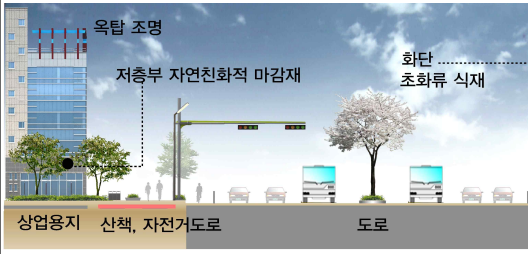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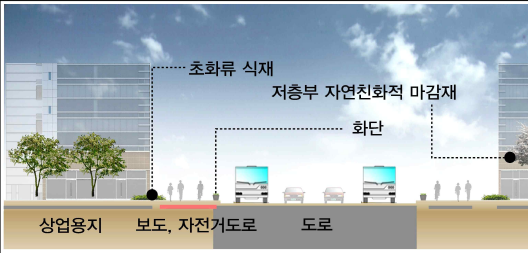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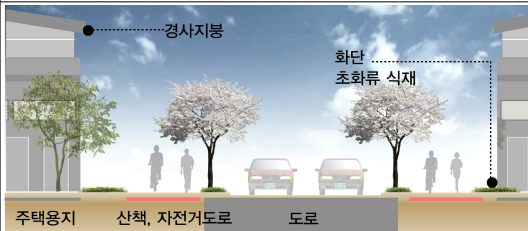
제 34 조 (가로축 테마에 관한 사항)

- ① 가로 경관축으로 설정된 도로는 군산 미장지구의 경관창출을 위해 경관축에 부여된 테마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가로 경관축은 신도시 골격을 이루며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3개 가로를 설정한다.
- ③ 도로 및 주변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침의 내용대로 따를 수 없을 경우 전체적인 조경 및 경관 컨셉에 맞도록 조성한다.

〈그림 V-1-1〉 주요 가로축경관



〈표 V-1-1〉 가로축 연출방향

구 분	연출방향
상징가로	• 건축물 입면특화 및 상징적 스카이라인 연출 • 대상지 중심대로(미장로·대로1-1호선)주변을 특화된 공공시설 연출 • 도로변 자전거 도로, 보행자도로 서치 및 경계부위 화단설치 • 완충녹지와 연결된 도로는 동일한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터널로 활용 • 완충녹지 연결구간에 가로변 1열에 한해 테마수종과 동일한 수종 식재하거나 일정폭의 초화류 조성  
특화가로	• 상업시설변 테마가로수를 활용한 가로공원 연출 • 건축선 이격을 통한 도로변 보행공간 확보 • 특화가로변 다층구조의 녹지대 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상업지역 진입부 및 도로 결절부 테마를 반영한 특화된 포장패턴 연출  
생활가로	• 가로별 테마수종을 식재하거나 계절성을 연출할 수 있는 유사수종 식재로 계절감 부여 • 가로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녹지대 경계에 휴게시설 배치  
보행가로	• 보행가로내 테마가로수를 식재하거나 계절성을 연출할 수 있는 유사수종 식재 • 보행가로변 커뮤니티를 고려한 포켓공간 및 휴게시설을 일정간격으로 설치  

제 35 조 (가로포장에 관한 사항)

- ① 가로경관축의 보도포장은 도로의 위계에 따라 패턴을 달리하는 것을 권장하며 단순하게 조성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각적 방해가 없도록 한다.
- ② 상기 주요 지점의 포장패턴은 군산 미장지구의 특성을 살린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단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 ③ 기타 내부 가로 및 일반구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식재 및 시설물 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 분위기를 연출한다.
- ④ 횡단보도 주변에는 시각장애자용 점자블럭과 턱없는 경계석, 블라드 등을 설치한다.

〈표 V-1-2〉 경관축별 가로포장

구 분	연출방향	도로포장 예시
상징가로	- 군산 미장지구의 대표적 이미지 고려하여 지구 컨셉을 반영한 패턴 개발 - 직선요소를 활용한 심플한 포장 패턴	
생활가로	- 점적인 패턴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연출 - 연속성을 고려한 바닥포장 패턴개발	
보행가로	- 보행가로 내 주요 지점 테마형 패턴 개발 - 간결한 패턴연출로 주변과 조화 도모	
특화가로	- 특화가로 내 보도포장 특화로 상징적 가로경관 연출 - 테마이미지를 반영한 곡선의 패턴 디자인	

제 36 조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

-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노폭 30m 이상 도로로서 보도 폭 3m 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 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6~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 식재를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 버스정차장 주변 등은 운전자와 보행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제 2 장 보행축 경관(변경없음)

제 37 조 (보행축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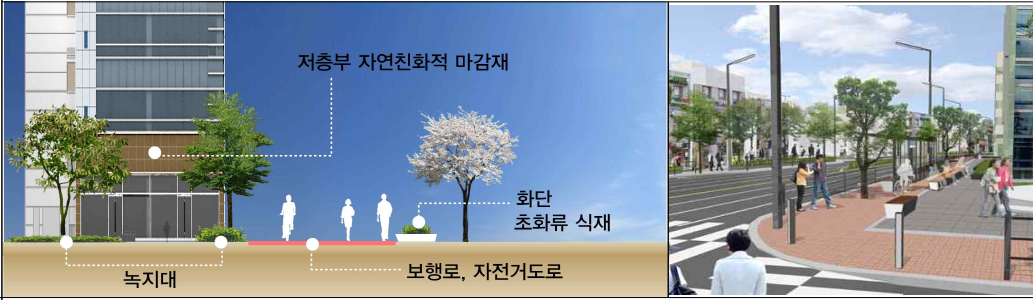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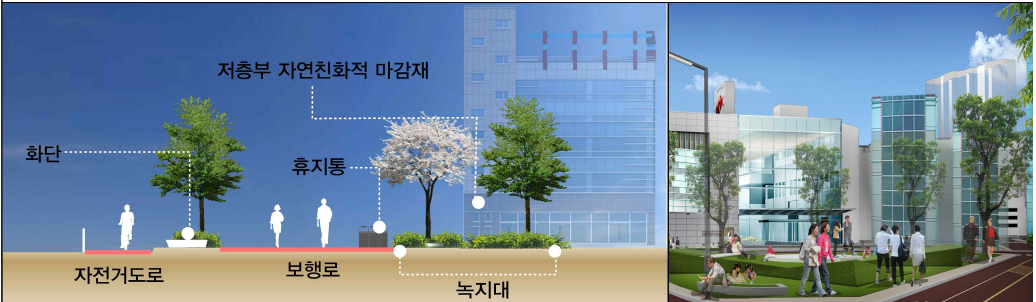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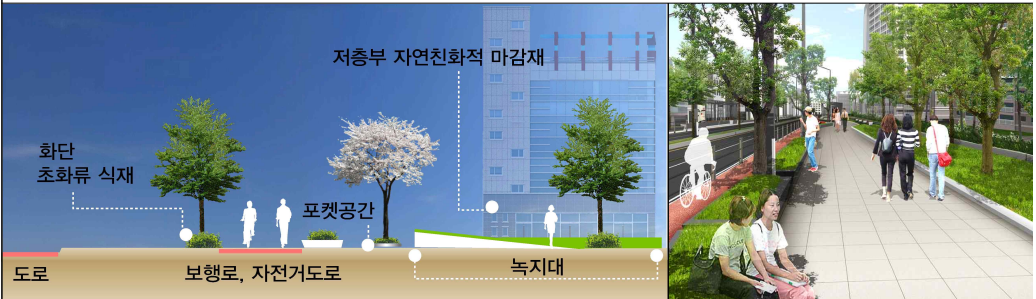
- ① 특화 지역으로 설정된 경관축의 보행축과 상업지구 보행축은 군산 미장지구의 독특한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테마를 부여하고 각 경관축에 부여된 테마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② 보행 경관축은 연속된 가로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 ③ 각 보행경관축의 특성에 따라 휴게, 조망, 위락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다.
- ④ 도로 및 주변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침의 내용대로 따를 수 없을 경우 전체적인 조경 및 경관 컨셉에 맞도록 조성한다.

〈그림 V-2-1〉 주요 보행축



제 38 조 (보행축 연출에 관한사항)

〈표 V-2-1〉 테마보행축 연출방향

구 분	연출방향
상업지역 가로변 보행축	• 보행축에 일체형의 가로등과 배너설치 • 시설물은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축 중심에 일정간격으로 배치 • 건축물 전면에 이동식 플랜터박스를 조성하여 활기 넘치는 상업가로 연출 • 상업시설 1층부 높이 통일로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연출 • 옥외광고물 정비 및 차양막 설치로 이국적 가로경관 연출 
상업지역 공원변 보행축	• 보행축 중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초화류 식재공간 확보 • 녹지대 중심부 조명열주 설치 • 녹지대 주변으로 일정간격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게시설 설치 • 가각부 건축선 이격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후 상징조형물 설치권장 •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정리된 경관연출 • 보도 포장패턴, 바닥조명 등 차별화된 포장연출 
특화보행축	• 건축물 이격을 통한 공간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 건축선으로부터 5m 녹지대를 조성하고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가로공원 조성 • 그늘형성이 가능한 수종 식재를 권장하며, 휴게시설의 배치는 녹지경계를 넘지 않도록 함 • 휴게시설을 가로변 녹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적인 재질을 권장 

제 3 장 수경축 경관(변경없음)

제 39 조 (수경축 조성에 관한 사항)

- ① 수로 선형을 최대한 보전한다.
- ② 수변 식재공간의 확보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 ③ 수변 건축물의 하부녹화 등을 통하여 녹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 ④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며, 군산 미장지구구의 테마를 담은 교량디자인을 연출한다.
- ⑤ 도로 및 주변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침의 내용대로 따를 수 없을 경우 전체적인 조경 및 경관 컨셉에 맞도록 조성한다.

〈그림 V-3-1〉 주요 수경축



제 40 조 (수경축 연출에 관한 사항)

- ① 기존 수로의 선형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경관을 유도하여 자연을 최대한 즐기게 한다.
- ② 기존천과 연계하여 선형의 연속된 녹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절형 교목 등을 열식하고, 조형물 및 조명열주를 일정간격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③ 고수부지 : 산책로, 자전거도로, 초지, 초화원 등을 설치한다.
- ④ 수로안 : 자연석과 식생 등을 활용하여 자연스런 수변경관을 연출한다.

〈그림 V-3-2〉 수경축 연출 예시



제 4 장 녹지축 경관(변경없음)

제 41 조 (녹지축에 관한 사항)

- ① 군산 미장지구 내 동서간 녹지축을 형성하여 어디서든 풍성한 녹지가 흐르는 친 환경 지구경관을 연출한다.
- ② 녹지거점 주변으로 휴게기능을 수행하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 ③ 공동주택변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소음, 공해저감 및 차폐기능을 도모한다.
- ④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완충녹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하여 각종 재해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그림 V-4-1〉 녹지축 및 녹지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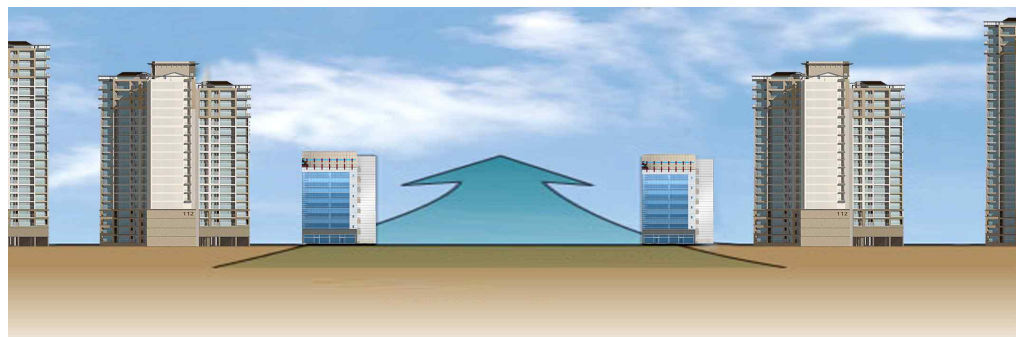


제 5 장 통 경 축(변경없음)

제 42 조 (통경축에 관한 사항)

- ① 지구의 중앙 블록에 조망형 통경축 확보하도록 한다.
- ② 조망 차폐율이 낮은 타워형 공동주택을 권장하여 조망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 V-5-1〉 통경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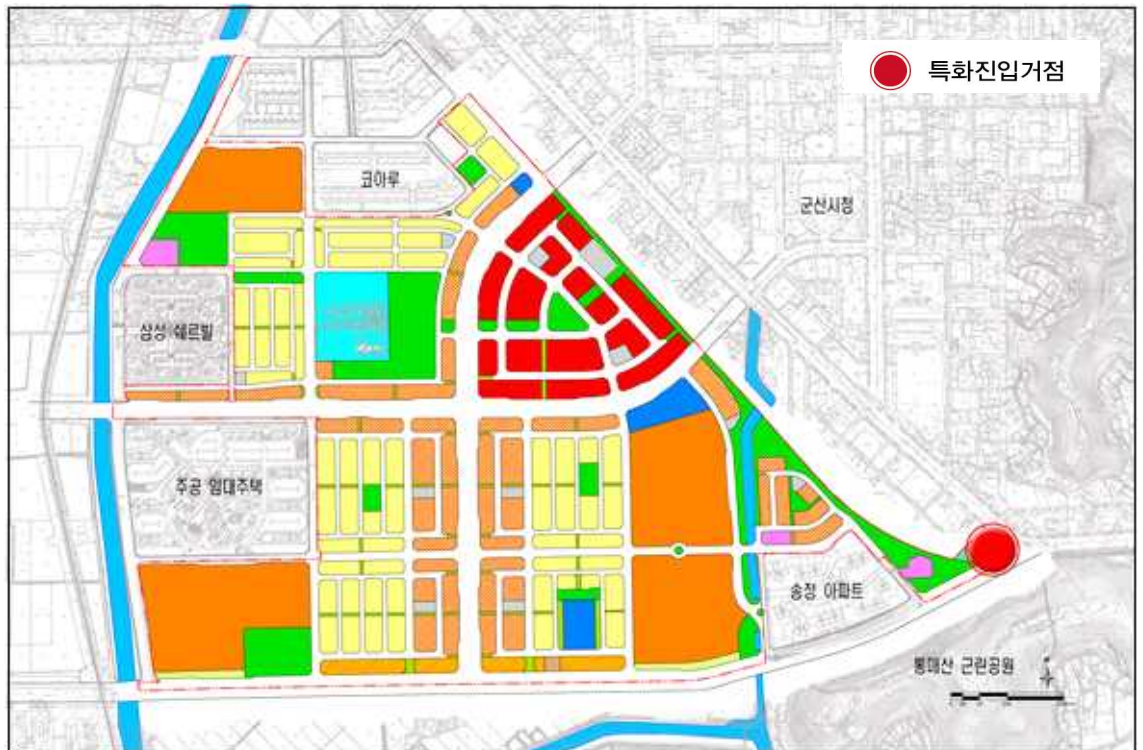


제 6 장 거점 경관(변경없음)

제 43 조 (거점에 관한 사항)

- ① 진입부에 통일성 있는 상징 조형물로 공간연출을 한다.
- ② 조명을 통한 상징적 빛의 연출로 야간에도 활기 넘치는 경관을 연출하도록 한다.
- ③ 근린공원과 보행동선을 연계한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연출한다.

〈그림 V-6-1〉 거점 경관



제 44 조 (요소별 연출에 관한 사항)

〈표 V-6-1〉 거점 요소 연출

구 분	연출방향 및 예시도
진입거점	• 진입부 구조물 설치로 상징성 있는 진입공간 연출 • 조형물의 업라이팅 조명연출을 통한 중규모 이상의 상징적 야간경관 연출

제 7 장 공원 경관(변경없음)

제 45 조 (공원 테마에 관한 사항)

- ① 공원의 성격별로 차별화된 테마 부여한다.
- ②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지구내 이용자를 위한 Recreation 공간을 조성한다.
- ③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면적인 테마로 부여하고 시설물 및 패턴, 평면의 형태에 이미지를 적용하여 조성한다.

〈그림 V-7-1〉 주요 공원



제 46 조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표 V-7-1) 공원 조성

구 분	연출방향
근린공원	• 각 근린공원에 테마에 적합한 경관 이미지 연출 • 기존 수경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테마수종 식재 • 근린공원과 보행가로가 만나는 경계부 일정폭 초화류 공간 확보 • 중심녹지축 및 근린공원과 녹지연계를 통한 녹지네트워크 구현 • 공원내 운동시설 및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건강증진 도모 • 공원별 조망특성을 살린 시설배치로 조망이 시원한 경관 제공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의 입구는 가능한 보행축선상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로가 근접해 있지 않을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지 내부도로와 면한 부분에 설치 • 어린이공원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는 지정된 테마에 부합되도록 함  
소공원	• 소공원 조성에 따른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커뮤니티 공간 활용 • 소공원내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조성으로 쉼터 제공 • 녹지와 조화로운 소재의 친환경적인 시설물 재료, 형태 연출  

제 8 장 건축물 경관(변경)

제 47 조 (상업, 준주거,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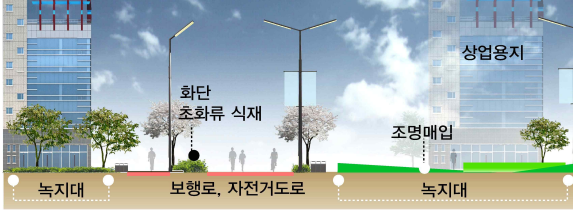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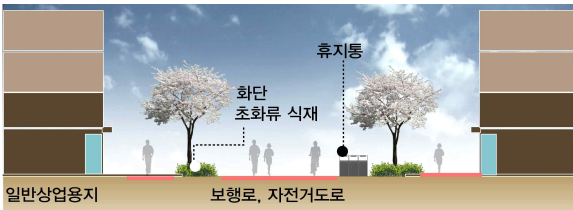
- ① 상업지역 중심부는 결절부의 광장, 조형물 등을 이용 상징적 공간을 연출한다.
- ② 도로 곡선화 및 보행친화 도로포장재 사용으로 보행중심의 쾌적한 상업공간으로 연출한다.
- ③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테마상업공간으로 일체감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 ④ 테마상업 지역은 인지성 향상 및 만남의 장소로 특화한다.
- ⑤ 공원 및 보행자도로 방향으로 전면성을 살린 건축디자인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림 V-8-1〉 주요 상업시설



제 48 조 (상업,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

〈표 V-8-1〉 상업,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조성

구 분	연출방향
상업, 준주거, 근린생활시설용지	• 2층 이하의 입면에 대해 색채/재질의 통일된 디자인 연출 • 각종 경계부에는 돌출외장, 몰딩 등으로 건축물 미관 향상 • 2층 이상의 입면에 대해 창문형태의 통일
	 
	기정 • 보행자전용도로변 중앙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상징가로 조성 • 건축물 1층부는 테라스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가로 활성화 도모 • 1층부는 색채를 통일하고 2층이상은 발코니를 조성하며 지붕은 경사형 지붕으로 통일함
	변경 • 보행자전용도로변 중앙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상징가로 조성 • 건축물 1층부는 테라스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가로 활성화 도모 • 1층부는 색채를 통일한다  

제 49 조 (공공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① 도로에서 진입성과 전면성을 가지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한다.
- ② 도로에서의 전면성 확보를 위해 중심으로 가로축에 배치한다.
- ③ 자연친화적 입면 마감재료 및 입면녹화를 통한 녹지와 조화롭게 연출한다.

〈그림 V-8-2〉 공공시설 조성



제 50 조 (주유소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① 건축물의 자체의 형태보다는 입면의 패턴을 통한 연출을 한다.
- ②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과 어우러지는 심플한 외관을 연출한다.

〈그림 V-8-3〉 주유소시설 조성



제 9 장 색채 경관(변경없음)

제 51 조 (색채경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① 원경에 관한 사항 - 변화가 풍부한 지역 경관 색채를 연출한다.

1. 경관 권역별 차별화된 이미지를 고려한 경관 색채를 연출한다.
2. 원경, 중경, 근경의 다양한 변화가 있는 경관 색채를 연출한다.

〈그림 V-9-1〉 원경에서의 도시경관 (풍부한 경관색채)



② 중경에 관한 사항 - 따뜻하고 차분한 건축물 색채를 연출한다.

1. 군산 미장지구의 풍토와 지역색을 고려한 색채를 선정한다.
2. 도시의 기초를 형성하는 건축물은 차분한 색채로 편안함을 부여한다.

〈그림 V-9-2〉 중경에서의 도시경관 (차분한 건축물)



③ 근경에 관한 사항 - 가로의 품격을 높이는 시설물 색채를 연출한다.

1. 가로는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 다양한 기능의 시설물이 혼재한다.
2.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색채계획으로 가로의 품격 향상한다.

〈그림 V-9-3〉 근경에서의 도시경관 (품격있는 시설물)



제 52 조 (색채경관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① 군산시에 동화되는 색채계획을 한다.

1. 배경이 되는 군산시의 녹지와 조화되는 난색계열의 색채계획을 한다.
2. 통매산 등 고지대에서의 조망을 고려한 통일된 지붕색채계획을 한다.
3. 경포천과 조화되는高明도의 맑은 이미지의 색채계획을 한다.

② 연속성 있는 색채계획을 한다.

1. 하나의 공작물이 아닌 가로경관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2. 색채 계획 전에 가로경관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 한다.
3. 주변건물의 색채와 연계된 계획으로 공통적으로 편안한 색채계획을 한다.

③ 장소나 용도에 어울리는 색채를 적용한다.

1.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지역에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한다.
2. 주택용지는 편안함과 차분함을 줄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3. 상업용지는 적당한 활력을 주는 색채를 사용한다.

④ 건물의 규모나 형태에 어울리는 색채를 적용한다.

1. 넓은 면적에 고채도의 화려한 색채의 사용은 자제한다.
2. 큰 면적은 고명도-저채도, 작은 면적은 저명도-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한다.
3. 복잡한 형태는 단순한 색채, 단조로운 형태는 변화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⑤ 강조할 것과 절제할 것의 질서를 부여한다.

1. 배경이 되는 자연의 색채와 융화되는 색을 사용한다.
2. 건축물과 공작물은 배경으로서 절제해야 할 색을 사용한다.
3. 사인이나 행사의 색은 그림으로서 강조할 색을 사용한다.

⑥ 자극적인 색채와 그래픽을 지양한다.

1. 건축물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 색을 사용한다.
2. 보조색은 주로 중명도 중채도의 색을 사용,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3. 강조색은 중채도 이상의 색의 사용도 가능하다.

제 53 조 (색채경관 연출에 관한 사항)

- ① 색채경관 설계지침은 군산 미장지구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색채지침을 말한다.
- ② 색채경관 설계지침은 건축물(용도별), 시설물(유형별),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지침으로 구분된다.
- ③ 건축물 색채지침은 주거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준주거·상업용지(건축물), 공공용지(건축물)로 분류되며,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의 색채범위를 지정한다.
- ④ 시설물 설계지침은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안내시설물, 보도포장, 옥외광고물로 분류하여 도시 윤곽이 되는 시설, 도시 배경이 되는 시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⑤ 광고물 색채지침은 배경색, 글자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⑥ 도시의 배경이 되는 시설은 저채도 차분한 색채로 도시이미지를 정돈하도록 하고, 도시의 윤곽이 되는 시설은 상징색 적용으로 지역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 ⑦ 색채설계지침 외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 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 ⑧ 색범위는 NCS(Munsell은 부록으로 제시) 국제표준 표기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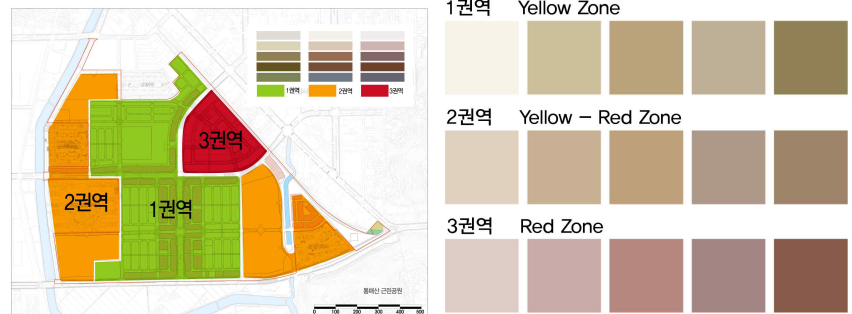
제 54 조 (용도별 색채설계지침에 관한 사항)

① 공동주택용지 색채설계지침

1. 공동주택색채는 원경에서 단지의 통일된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한다.
2. 공동주택색채는 주거환경에 적합한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를 사용한다.
3. 공동주택색채는 대규모이므로 위압감을 해소하는 색채를 사용한다.
4. 공동주택은 경관권역에 따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사용색 범위 내에서 색채를 선정한다.
5. 각 권역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6. 15층 이상 판상형은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계획한다.
7. 탑상형은 가급적 중층이상을 단일 색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8. 상층으로 갈수록高明도 색채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부여한다.
9. 저층부는 중,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하여 안정감을 부여한다.
10. 지붕색은 녹지와 어울리는 갈색, 회색계열 적용, 한 단지 내에서는 통일한다.

11. 옥상설비와 물딩은 주조색 또는 보조색으로 하여 돌출되지 않게 한다.
12. 근린생활시설은 상품과 광고물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한다.
13. 부대시설은 중채도의 색채로 엑센트 역할을 할 수 있다.
14.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 이하 색을 사용한다.
15. 축벽의 동호수, 건설사 로고 등의 색채는 외장색채와 유사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색채로 계획한다.
16. 동번호의 크기 및 위치는 축벽그래픽 표기 방법을 준수한다.

〈그림 V-9-4〉 권역구분에 따른 색상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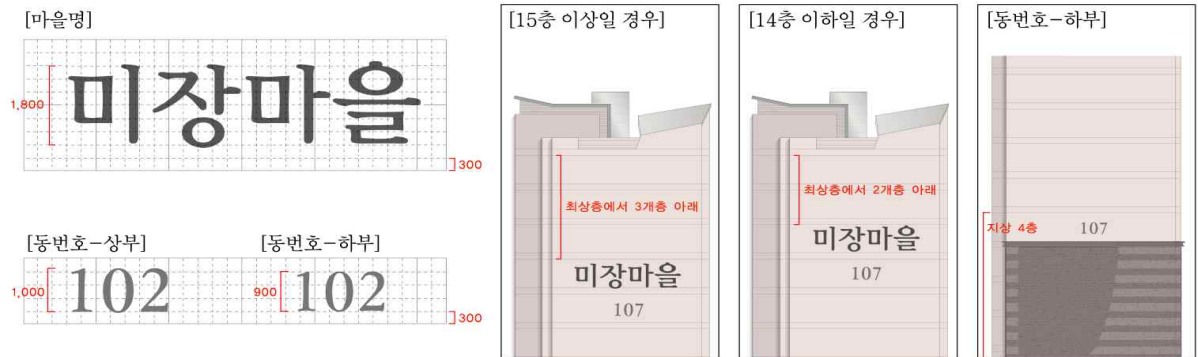
〈표 V-9-1〉 권역별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1권역	주조색	Y-Y40R	10-20	2-10
	보조색	Y-Y40R	10-40	2-20
	강조색	all color	15-70	10-30
2권역	주조색	Y30R-Y70R	5-20	2-10
	보조색	Y30R-Y70R	10-40	2-20
	강조색	all color	15-70	10-30
3권역	주조색	G80Y-R	10-30	2-20
	보조색	G80Y-R20B	10-40	2-30
	강조색	all color	10-70	10-40

〈표 V-9-2〉 사용색 예시

구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1권역											
	S2005-Y	S2020-Y	S2010-Y	S2005-Y30R	S4020-Y10R	S4010-Y30R	S4020-Y20R	S5010-Y30R	S5030-Y20R	S4020-G90Y	S3020-Y
2권역											
	S1502-Y50R	S1005-Y50R	S2005-Y50R	S2010-Y50R	S3010-Y60R	S3005-Y50R	S3020-Y40R	S4010-Y50R	S3010-Y40R	S4005-R80B	S4010-B50G
3권역											
	S1502-R	S1010-Y70R	S2005-Y60R	S2010-Y80R	S2020-Y90R	S3020-Y90R	S4020-Y70R	S4020-Y80R	S5020-Y70R	S4010-R30B	S3010-R80B

〈그림 V-9-5〉 권역별 색채계획 예시



〈그림 V-9-6〉 권역별 색채계획 예시



② 단독주택용지 색채설계지침

1. 단독주택 색채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2. 단독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 온화하고 따뜻한 난색계열로 계획한다.
3. 건물색채는 사용범위 내에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선정한다.
4. 입면은 계획에 따라 주조색 또는 주조와 보조색만 사용하여 연출 가능하다.
5. 입면색채는 단색 또는 2색 이내의 색채로 계획하도록 한다.
6. 소재색을 사용할 경우 보조색 범위 내에서 주조색으로 사용 가능하다.
7.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적용하고 동일 지구에서는 통일하도록 권장한다.
8. 옥상설비와 옥상바닥은 외장색채보다 채도가 낮은 색으로 적용한다.
9. 창틀, 문 부위에는 흑색량 10 이하의 밝은 색이나 흑색량 60 이상의 짙은 색으로 액센트 역할로 사용 가능하다.
10. 담장의 색채는 순색량 15 이하의 색을 사용하여 건축물 외장과 색차를 적게 하고 식물과의 색차도 적게 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표 V-10-3〉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G80Y-R	10-30	2-20
보조색	G80Y-R20B	10-40	2-30
강조색	all-color	10-70	10-40

〈그림 V-10-7〉 사용색 예시



③ 상업시설용지 색채설계지침

1. 상업시설용지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지역을 포함한다.
2. 상업시설건축물 색채는 주위 건물과의 연속성 있는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3. 상업시설용지는 옥외광고물과 상품 색채를 고려하여 차분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4. 상업시설용지는 일반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지역)과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사용색 범위 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5. 일반지역은 연속성을 고려하여 저채도의 차분한 색채로 계획한다.
6. 특화상업지역은 중채도의 색채로 특화하도록 한다.
7. 주조색 또는 보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하다.
8. 노출된 건물외벽은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미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9. 소재색이 제시된 색 범위 내에 없을 경우 가장 비슷한 톤으로 적용한다.
10. 유리가 건물의 70% 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색으로 인식될 만한 착색을 하지 않은 유리는 사용색 범위 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1. 옥외광고물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표 V-10-4〉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일반지역	상업지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주조색	Y10R-R	5-20	10-30	2-15	20-30
보조색	Y10R-R	10-40	20-50	2-20	10-40
강조색	all color	5-70	5-50	2-20	2-60

〈그림 V-10-8〉 사용색 예시



④ 공공용지 색채설계지침

1. 공공용지는 공공청사, 학교, 종교시설 등을 포함한다.
2. 공공용지는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색채경관을 연출한다.
3. 공공시설은 신뢰감을 주는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경관을 연출한다.
4. 학교는 난색계열의 중고채도의 강조색으로 경쾌한 경관을 연출한다.
5. 종교시설은 저채도 색채로 친근감 있는 색채경관을 연출한다.
6. 주조색 또는 보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가능하다.
7. 소재색 사용 시 적용 색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8. 소재색 사용 시 보조색 범위에서 주조색으로 적용 가능하다.
9. 유리가 건물의 70%이상 차지할 경우 고채도색으로 인식될 만한 착색을 하지 않은 유리는 사용 색 범위 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10. 옹벽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 친자연적 재료 사용으로 조화롭게 계획한다.
11.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권장한다.
12. 건축물 벽면, 옹벽에 강한 그래픽이나 현란한 색채의 사용 금지한다.
13.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 이하 색을 사용한다.

〈표 V-10-5〉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G80Y-R10B	5-20	2-10
보조색	G80Y-R10B	5-30	2-30
강조색	all color	15-60	2-70

〈그림 V-10-9〉 사용색 예시



제 55 조 (시설별 색채설계지침에 관한 사항)

① 도시구조물 색채설계지침

1. 도시구조물은 자연과 함께 조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2. 도시구조물은 구조물의 형태가 부각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3. 도시구조물은 교량, 방음벽, 옹벽, 조형물, 상징조형물 등을 포함한다.
4. 도시구조물의 규모에 따라 교량 등 큰 구조물은 기초색을, 방음벽, 옹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기초색과 보조색을, 상징조형물, 상징교량 등은 상징색을 적용하도록 한다.
5. 순색량 5 이하, 흑색량 40 이하의 색은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6. 형태가 복잡한 구조물은 단색으로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7.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에 의한 변화 있는 계획을 하도록 한다.
8. 2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할 때에는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9. 조형물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제시된 색 범위 외에 자유롭게 계획 가능하다.

〈표 V-10-6〉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기조색	all color	10-30	2-10
보조색	all color	5-40	2-30
상징색	all color	5-60	10-70

〈그림 V-10-10〉 사용색 예시



② 보도포장 색채설계지침

1. 보도포장은 연속성 있는 요소로 주변 녹음, 건축물과 조화롭게 계획하도록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는 색채를 사용한다.
3. 주거지역, 공공지역의 가로는 정적인 공간으로 주조색과 보조색 범위 내에서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하여 차분한 이미지의 가로 조성하도록 한다.
4. 상업지역 가로, 광장포장 등 동적인 공간 중에서 강조부분은 강조색을 포인트로 적용하여 활기찬 이미지의 가로로 조성하도록 한다.
5. 보도포장은 2~3가지의 배색으로 적용, 복잡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광장포장은 패턴에 따라 3가지 이상의 색채 배색을 적용 가능하다.
7.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공간과 색 차이를 두어 명확히 구분한다.
8. 장애인 점자블록은 가급적 저채도의 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9. 주거지역은 단순하고 안정감 있는 형태미 창출한다.
10. 상업지역은 선형에 의한 진행성 및 방향성을 주는 포장 패턴을 연출한다.
11. 광장 등 넓은 공간에서는 규칙적인 반복에 의한 질서감 연출한다.
12. 보도포장은 마감재 고유의 색을 느낄 수 있는 계획 전개하도록 한다.
13. 중채도 이상의 채도가 높게 착색된 벽돌은 사용을 금한다.

〈표 V-10-7〉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주조색	Y-R	20-30	0-20
보조색	G50Y-R	20-50	0-30
강조색	all color	10-70	0-30

〈그림 V-10-11〉 사용색 예시



③ 옥외광고물 색채설계지침

1. 옥외광고물은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로 전개한다.
2. 주거지역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3. 상업지역은 중채도 이하의 색채 사용으로 경쾌한 이미지 부여한다.
4. 옥외광고물은 사용부위에 따라 배경색과 글자색으로 구분한다.
5. 배경색은 건축외장을 고려, 건축물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배경색은 사용색 범위 내에서 동일 건물에서는 동일한 배경색을 적용한다.
7. 배경은 과다한 색채나 그래픽 사용을 억제, 단색이나 2색에 의한 배색을 한다.
8. 동일 건물 내에서 차양막 색채는 통일한다.
9. 글자색은 사용색 범위 내에서 배경색과 유사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10. 브랜드 로고나 심볼은 순색량을 조절하여 글자색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1. 글자색과 배경색은 흑색량을 40 이상 차이를 두어 가시성 부여한다.
12. 옥외광고물은 마감재 고유의 소재색을 살릴 수 있는 색채 사용 권장한다.
13. 넓은 면적의 고채도색 사용은 규제한다.(30% 이하 적용을 권장)

〈표 V-10-8〉 사용색 범위

구분	색상	흑색량	순색량
배경색	R90B-R20B	10-70	2-30
글자색	all color	5-80	2-70

〈그림 V-10-12〉 사용색 예시

배경색											
	S1002-Y	S2005-Y	S3010-Y20R	S4010-Y30R	S3020-G70Y	S4010-G30Y	S3020-B70G	S6020-B30G	S7010-G50Y	S6010-Y50R	S7005-Y50R
글자색											
	S6030-Y90R	S7020-G50Y	S5540-B20G	S8010-Y90R	S5502-G	S4010-Y30R	S4050-B30G	S5030-G50Y	S2030-G80Y	S2020-B50G	S0502-Y



제 10 장 옥외광고물(변경없음)

제 56 조 (옥외광고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림 V-10-1〉 옥외광고물 기본방향



① 광고물 품격화

간판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도입한다.

② 건물과 일체화

건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과의 일체화를 구현한다.

③ 광고물 명소화

거리별 특성을 고려하여 테마별 특화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림 V-10-2〉 옥외광고물 종합도



〈그림 V-10-3〉 기본원칙



자연재료 사용



통일된 이미지 구현



크기의 최소화



건축물과의 일체화 구현



볼거리 제공



조형적 광고물 구현

제 57 조 (옥외광고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①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광고물 디자인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며 자연의 모티브를 도입하여 형태 디자인을 계획하고 자연환경 색채를 고려한 광고물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된 도시이미지 구현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일관된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의 제한으로 가로 연속된 이미지를 구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광고물의 크기의 최소화로 주변과의 조화 도모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출색 및 고채도의 색을 지양하며 휘도가 낮은 조명방식의 적용계획을 수립한다.

④ 건축물 설계 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반영으로 일체화 구현

건축물과의 일체화를 위하여 건축물 설계 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며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시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⑤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조형적 광고물의 품격화 구현

예술성을 고려한 광고물의 품격화를 위하여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조형적 디자인을 계획하고 디자이너 등록제 및 실명제 도입으로 광고물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⑥ 간판을 볼거리로 제공하여 도시의 관광상품화 계획

간판을 관광 상품화하고 광고물의 명소화를 위하여 특화 이미지를 반영한 테마를 부여하고 광고물의 유형, 색채, 재료, 서체 등의 규제 및 완화를 계획한다.

제 58 조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지침)

①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지침은 군산 미장지구 전체지역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지구 전체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②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지침은 군산 미장지구 전 지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군산 미장지구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림 V-10-4〉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종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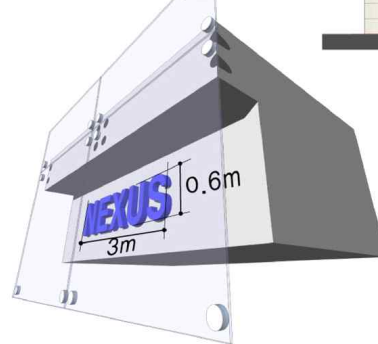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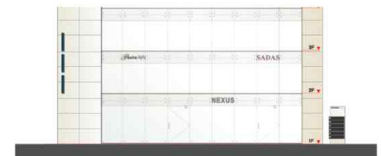
[가로형 간판]

- 2층이하의 업소에 한하여 설치
- 너비는 해당업소 가로폭 이내
- 높이는 1.2m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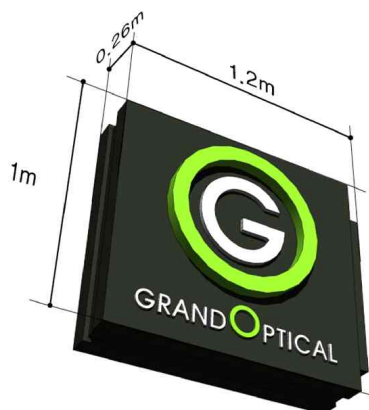
[가로형 간판_커튼월의 경우]

- 유리면에 광고물 설치 금지
- 내부 보 또는 게시물에 설치
- 가로 3m이내, 높이 1.2m이내



[돌출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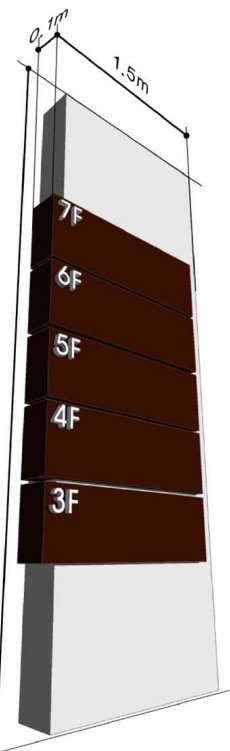
- 지하/내부업소 설치가능
- 가로는 벽면으로부터 1.2m이내
- 높이는 1m이내



[지주이용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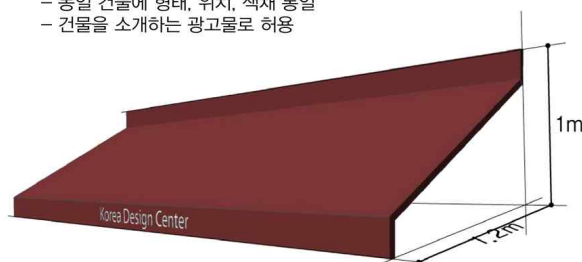
- 내부, 지하층, 3층이상 업소
-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중합안내판 형식

3.5m



[차양막]

- 2층이하에 설치 가능
- 동일 건물에 형태, 위치, 색채 통일
- 건물을 소개하는 광고물로 허용



〈그림 V-10-5〉 광고물 설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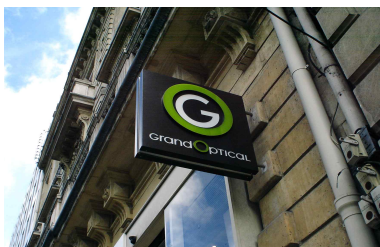
설치량



형태 및 규모



색채



재료



문자



조명

제 59 조 (요소별 광고물 설계지침)

① 설치량

1. 1개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개수는 1개 이내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도로의 곡각지점과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1개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나.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가로형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형태 및 규모

1. 가로형 간판은 건축물 설계 시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평면적인 판류형이 아닌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외벽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광고물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된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물주가 건축 시 가로형 간판의 규모범위 이내로 게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색채

1. 광고물의 색채는 돌출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옥외광고물 색채설계지침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입면 색채와 조화롭게 사용한다.

2. 단, 기업 C.I의 심볼(로고, 마크 등)은 기업고유의 색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재료

1. 광고물의 재료는 건축입면 재료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한다.

2. 친환경적이며 지역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하여 자연재료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⑤ 문자

1. 광고물 문자의 크기는 가로 0.6m 이내, 세로 0.6m 이내로 한다.

2. 광고물의 표기내용은 업소·상품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로고, 심볼 등)으로 표시하고, 지점명·전화번호·인터넷주소·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로 표시한다.

3. 문자색은 바탕색과 조화롭게 하고, 업소명은 가급적 1가지 색으로 한다.

⑥ 조명

1. 광고물의 휘도(밝기의 양)는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한다.

2. 점멸 또는 화면변환 방식의 네온, 동영상 형식 등은 표시를 금한다.

제 60 조 (유형별 광고물 설계지침)

① 가로형 간판

1.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하여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2.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해당 업소의 가로 폭에서 최대 2/3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최장 6m이내에서 설치, 세로는 1.2m 이내로 한다. 해당업소 중간에 벽면이 있을 경우에는 끊어서 표기 하거나 한쪽면만 사용하도록 한다.
3. 단일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명은 건축물 정면의 좌측(또는 우측)상단의 벽면 또는 출입구 캐노피 상단에 설치할 수 있고, 한 건축물에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형 문자로 설치하도록 한다.
4. 건축물명(또는 지번), 심볼(로고나 마크)만 표시하도록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5. 건축물명(또는 지번)은 가로 0.7m 이내, 세로 0.7m 이내로 설치하며, 건축물 정면의 좌측(또는 우측)상단에 설치할 경우에만 심볼(로고나 마크)의 크기를 세로 1.5m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6. 커튼월(Curtain Wall)로 마감된 경우에는 유리면에는 설치를 금하며, 내부 보 또는 내부판(게시틀)에 표시하도록 한다. 내부 구조체에 행거식의 설치도 가능하다.
7. 커튼월의 경우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3m 이내로 하며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V-10-6〉 가로형 간판 설치 예시



② 돌출간판

1. 1개 업소 당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세로쓰기를 할 수 있다.
3.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3m 이상, 상단은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축물 좌측 또는 우측의 끝선에서 0.3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일렬 정렬한다.
또한 건물 폭이 10m 이하인 경우에는 1줄로, 10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양쪽에

2줄로 설치할 수 있다.

5. 돌출간판의 가로크기는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세로는 1m 이내로 설치하고, 두께는 0.26m 이내로 한다.
6. 표기내용의 면적은 총면적의 3/8 이내로 표기한다.

〈그림 V-10-7〉 돌출간판 설치 예시



③ 지주이용간판

1. 내부,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업소는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이 두 개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거나,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한 건축물에 2개까지 설치가능하다.
2. 지주이용간판은 건축물 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개구부 또는 비상구의 자유로운 출입에 방해가 없도록 설치하며, 주변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축선 안쪽에 설치한다.
4. 간판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연립형식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 설치하되, 간판의 형태 및 스타일은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과 통일된 형태와 규격으로 지면으로부터 3.5m이하로 설치한다.
5. 형태 및 재료는 건물의 입면형태와 재료를 고려하여 일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림 V-10-8〉 지주이용간판 설치 예시



④ 창문이용광고물

1. 창문이용광고물의 범위는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m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 광고물을 포함한다.
2. 1층 입주 업소에 한하여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광고물 설치 개수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재료는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광고물 색채는 업소당 2개 색 이내로 하며,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을 금한다.

〈그림 V-10-9〉 창문이용광고물 설치 예시



⑤ 차양막

1. 차양막은 1층과 2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동일 층에서는 같은 형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너비는 단위 창문폭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양막 가로는 단위 창문 폭에서 좌우로 $\pm 0.1\text{m}$ 이내로 하며, 돌출 폭은 1.2m 이내, 높이는 1m 이내로 한다.
3. 차양막에서 표시위치는 차양막의 끝단 수평면에 표시하며, 표시내용은 심볼(로고나 마크)만 표기를 권장한다..
4. 차양막 재료는 비닐 사용을 금하며, 비와 눈, 햇빛에 강한 소재로 내구성과 색상의 지속성이 좋은 원단의 사용을 권장한다.
5. 차양막 색채는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6. 차양막 하단(바닥)면은 막혀있지 않은 열려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7. 차양막 내부에 조명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폐쇄형 조명, 네온, 점멸방식의 조명 사용을 금하며, 필요시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 V-10-10> 차양막 설치 예시



⑥ 공연간판 · 옥상간판 · 현수막 등

1. 공연간판,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표시를 금한다. 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득하여 설치 할 수 있다.
2.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애드벌룬, 입간판, 배너, 전단 등의 표시는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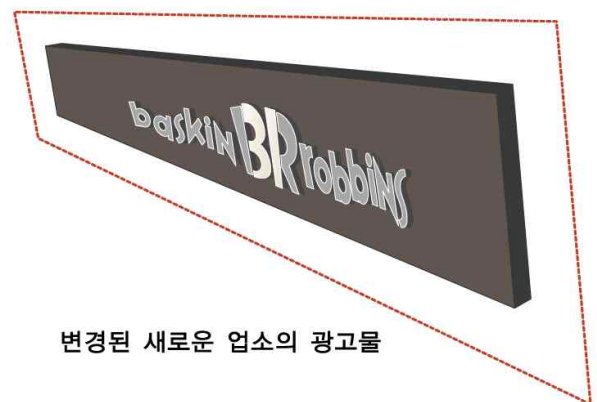
제 61 조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 ①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입면의 요소로 인식하여 건축미관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 ② 건축물 입면 설계 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를 지정하도록 한다.
- ③ 잦은 광고물의 교체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④ 건축물과의 일체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물 입면에 Sign Band를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 ⑤ 업소의 잦은 변경을 고려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을 한다.

〈그림 V-10-11〉 업소변경 시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



해당업소 변경
게시바 or 게시를 + Sign



제 62 조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표 V-10-1〉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구분	고려사항	비고
위치	대상 위치도 (1/500 축척)	1/500
개요	현장기본요건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지구, 전면 도로 폭, 용도, 층수, 마감재료 등)	1/500
관련 제도	지구단위계획지침 준수 내용 옥외광고물조례 준수 내용	글로 기입
광고물 설치도	건축입면도에 간판 부착 위치 및 크기, 재질 표시 정면, 배면, 좌/우측면에서 광고물 설치되는 도면 표기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500
광고물 설치내용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가로형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 돌출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 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 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함	글로 기입
유형별 상세도	가로형 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 돌출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상세도 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의 상세도 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함	1/20
	임대차계약서에 삽입할 내용 기입 관리부서 및 관리자 표기	글로 기입

〈그림 V-11-1〉 가로시설물 기본방향



〈그림 V-11-4〉 가로시설물 기본원칙



간결한 디자인



통일된 이미지



통합디자인



자연친화적 디자인



자연재료 사용



유니버설 디자인

제 11 장 가로시설물(변경없음)

제 63 조 (가로시설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① 일관된 기준의 토탈디자인

일관된 기준 적용과 심플한 시설물 디자인을 계획한다.

② 테마를 부여한 상징적 디자인

진입부 및 거점의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 디자인을 계획한다.

③ 시설물의 아트갤러리화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을 계획한다.

제 64 조 (가로시설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① 가로시설물 설계지침은 일반관리구역과 특정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일반관리지역에는 군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따르며, 특정관리구역에는 별도의 가로시설물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기능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도록 한다.

④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의 통합 설치 디자인

시설물의 설치 개수를 최소화하고 기능의 통합화를 위하여 기능 및 설치위치 등의 연계성을 가지는 요소와 시설물을 추출하고 통합 설치하도록 한다.

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가로의 친환경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에는 자연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설물 주변 및 시설물에 식재 및 녹화 등을 통하여 자연과 친숙한 환경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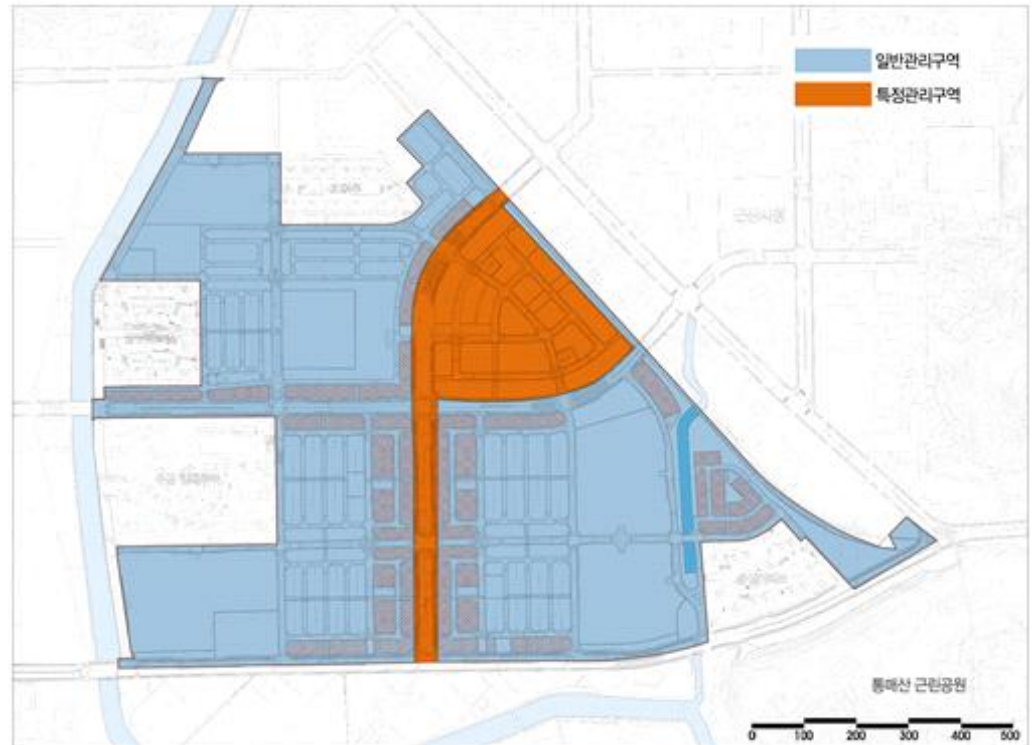
⑥ 자연재료의 색을 활용한 주변과의 조화 유도

시설물과 주변 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료는 자체의 색을 유지하도록 하며 돌출색 및 고채도, 고명도의 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⑦ 모든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에게 공공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계획하며, 또한 모근 공간에서 시설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 설치공간을 계획하도록 한다.

〈그림 V-11-2〉 가로시설물 적용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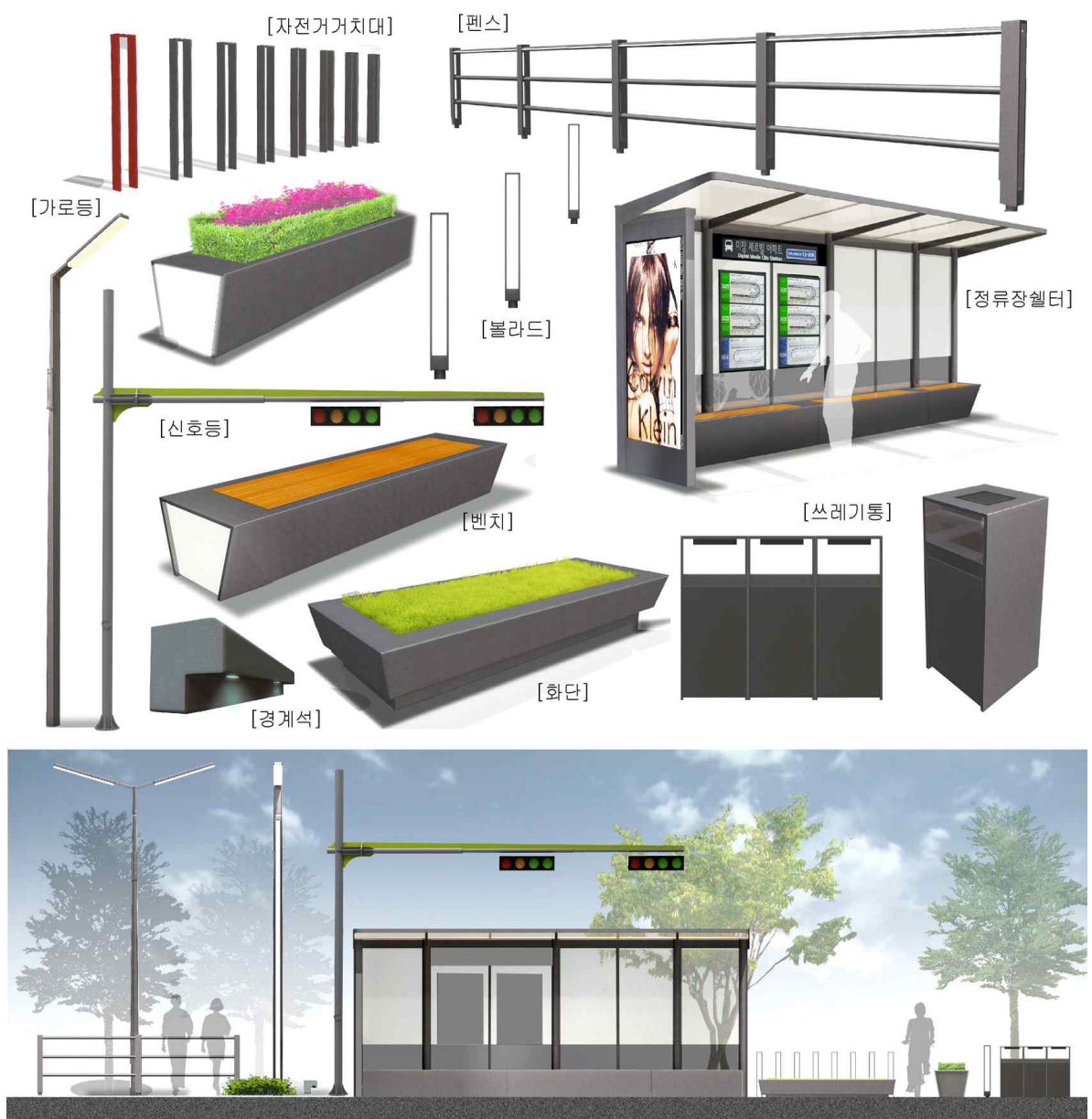
〈그림 V-11-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시설물 종합예시



제 65 조 특정관리구역 시설물디자인 설계지침

- ① 특정관리구역 시설물디자인 설계지침은 상업지역 및 특화거리지역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역할을 한다.
- ② 특정관리구역 시설물디자인 설계지침은 특화지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특화 지역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그림 V-11-5〉 특화지역 가로시설물 조성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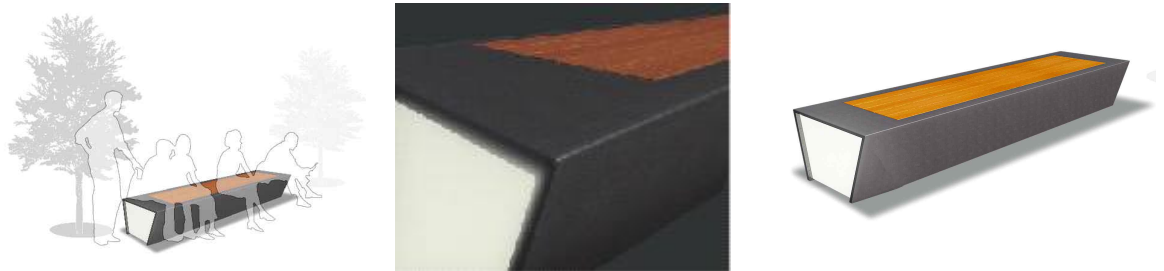


제 66 조 (휴게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벤치

1. 벤치는 최소한의 색채와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신체와 접하는 부분 라운딩 처리로 상해를 예방한다.
3. 화단, 가로 화분대 등의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4. 테마공원이나 특화된 거리의 경우 개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그림 V-11-6〉 벤치 예시



② 파고라

1.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2. 간결한 형태로 주변으로의 개방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조명의 설치는 지양하며 주변 가로등을 활용 하도록 한다.
4. 파고라의 구조물 및 주변에는 식재 및 녹화를 권장한다.

〈그림 V-11-7〉 파고라 예시



③ 휴지통

1. 도시 전체에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2.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고명도의 색은 금한다.
3. 수거 및 청소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적 측면도 고려한다.
4. 쓰레기의 투입구는 위쪽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 V-11-8〉 휴지통 예시



④ 공중화장실

1. 장애인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턱을 없애고 폭을 확보한다.
2.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한다.
3. 설치규모와 개수를 최소화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화로운 색을 적용한다.

〈그림 V-11-9〉 공중화장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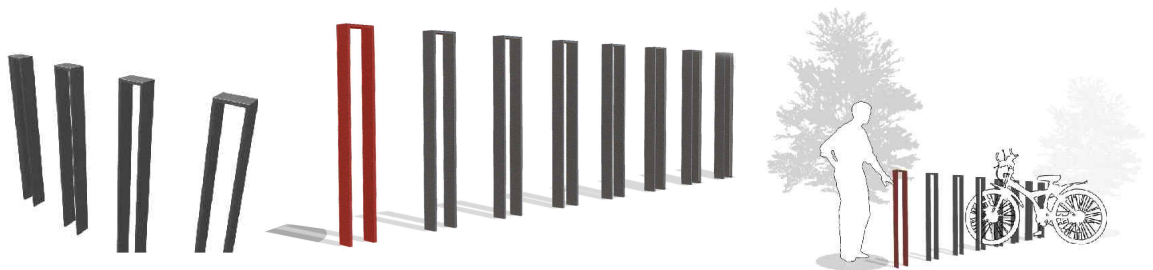


제 67 조 (서비스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자전거보관대

1. 획일화된 재료의 쓰지 않으며 주변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2.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 및 픽토그램 이외에 그래픽 적용은 금한다.
3. 다른 구조물이나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4. 자전거 보관대의 캐노피 설치의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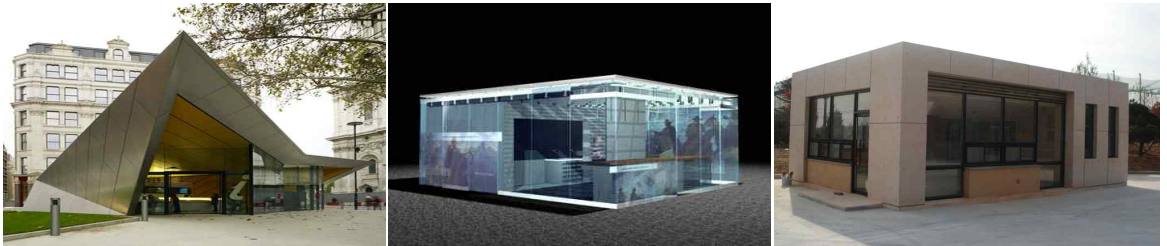
〈그림 V-11-10〉 자전거보관대 예시



② 관광안내소

1. 장애인 및 노약자를 고려하여 키오스크의 설치를 한다.
2. 관광안내소는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태를 디자인 한다.
3. 과도한 장식을 지양하고 시인성을 높인다.
4.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을 권장한다.

〈그림 V-11-11〉 관광안내소 예시



③ 공중전화부스

1. 도시 전체에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2. 최소한의 설치공간과 개수를 설정하도록 한다.
3. 건물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시설물과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4. 불필요한 그래픽 요소 및 통신사 로고 등의 적용을 금한다.

〈그림 V-11-12〉 공중전화부스 예시



④ 우체통

1. 지면과의 결합부분을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2. 투입구는 장애인 노약자들을 고려하여 높이와 각을 조절한다.
3. 바닥과 보도의 단 간격을 없애고 일체화 하도록 한다.
4. 시인성이 있는 색채를 사용하되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한다.

〈그림 V-11-13〉 우체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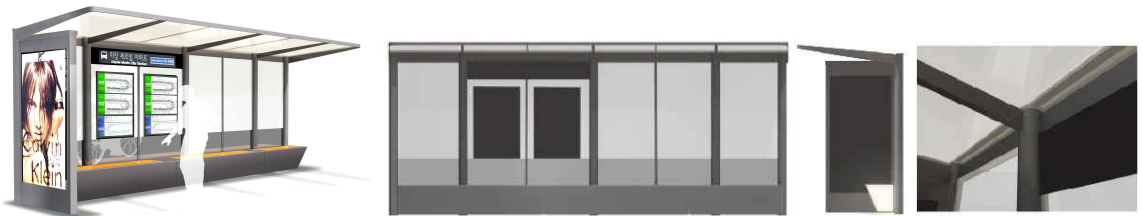


제 68 조 (통행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정류장 쉼터

1. 승차대 벽면에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2. 연계 가능한 시설물과의 통합을 권장한다.
3. 도시 전체에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감 구현한다.
4. 고채도 및 고명도의 색 사용은 금한다.

〈그림 V-11-14〉 정류장 쉼터 예시



④ 보도블럭

1. 동일한 공간에는 동일한 색채, 재료, 패턴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과도한 패턴 및 자극적인 색의 사용을 금한다.
3.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그림 V-11-15〉 보도블럭 예시



제 69 조 (보호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블라드

1.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한다.
2.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3. 다른 시설물 또는 기능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4. 고채도 및 원색의 사용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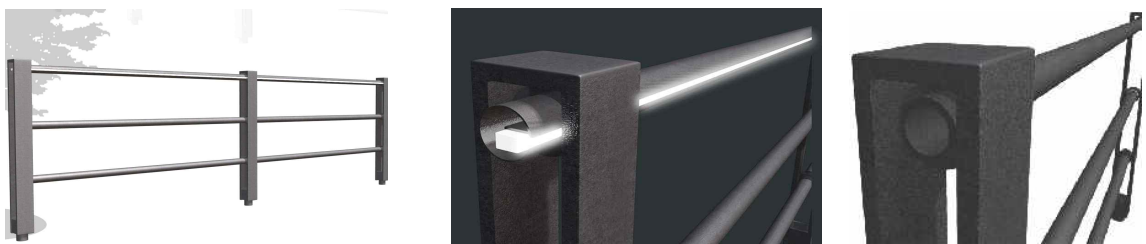
〈그림 V-11-16〉 블라드 예시



② 보호펜스

1. 장식적인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디자인 한다.
2. 재료의 원래의 색을 활용하도록 한다.
3. 문자나 로고 등 자치구의 표기는 하지 않는다.
4. 녹지 경계부에 설치할 경우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그림 V-11-17〉 보호펜스 예시



③ 방음벽

1. 획일화된 재료 및 색채의 사용을 지양한다.
2. 주변으로의 조망을 고려하여 투광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3. 식재 및 녹화를 적극 권장한다.
4. 높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선처리하여 시각적 피로감을 경감시킨다.

〈그림 V-11-18〉 방음벽 예시



④ 신호등주

1. 지면과의 결합부는 미려하게 마감 처리 한다.
2. 부착시설물은 등주와 일체감을 가지도록 한다.
3. 다른 가로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4. 장식적 문양 및 자치구의 상징물 삽입을 금한다.

〈그림 V-11-19〉 신호등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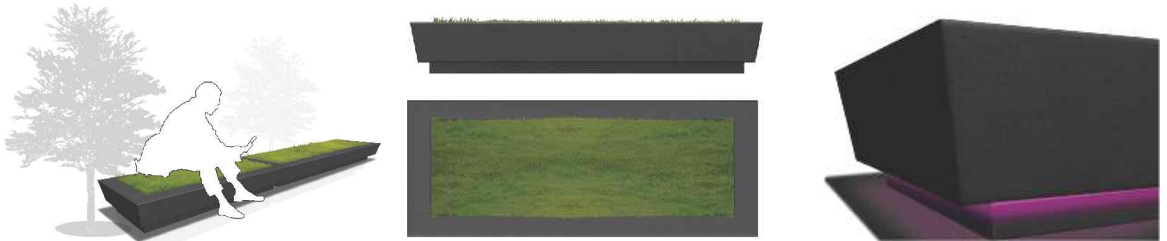


제 70 조 (녹지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가로화분대(플랜터)

1. 동일한 구간에서는 동일한 형태 및 재료, 색채를 적용한다.
2. 관할 자치지구 등의 표기를 지양한다.
3. 자연 친화적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4. 벤치나 볼라드, 가로수 보호덮개 등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그림 V-11-20〉 가로화분대(플랜터) 예시



제 71 조 (관리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맨홀

1. 보도블록의 색채 패턴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감을 가지게 한다.
2.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한다.
3.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 한다.

〈그림 V-11-21〉 맨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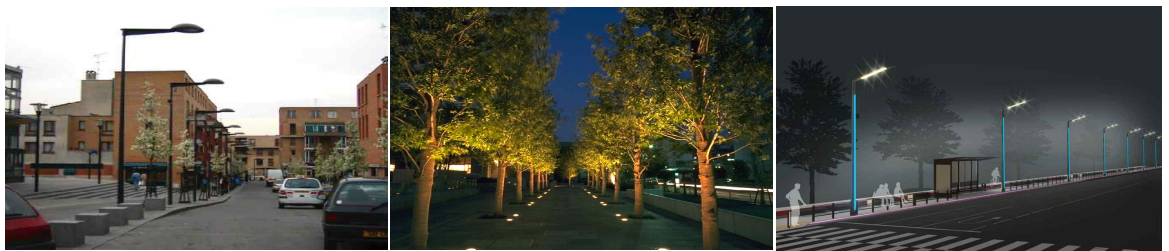


제 72 조 (조명시설물에 관한 사항)

① 조명시설

1. 고광택의 재료와 고채도 또는 원색의 색채 사용 지양한다.
2. 지면과의 결합부위 처리를 미려하게 한다.
3. 지나친 형태 변화 및 장식적 요소를 지양한다.

〈그림 V-11-22〉 조명시설 예시



〈그림 V-12-1〉 야간경관 기본원칙



자연의 빛에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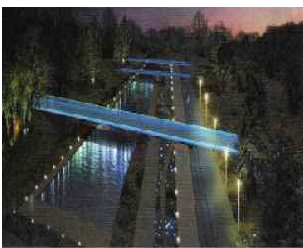
광공해의 최소화



도시 정체성 구현



보행자의 행태 고려



커뮤니티 환경 조성



특화조명으로 장소성 부여

제 12 장 야간경관(변경없음)

제 73 조 (야간경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① 절제된 빛 환경 구축

어두움과 조화로운 빛 환경을 통한 환경친화적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② 풍부한 도시야간 연출

빛으로 풍부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체성 있는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③ 인간을 고려한 빛 환경

인간과 교감하는 빛 환경으로 인간 중심의 야간경관을 계획한다.

제 74 조 (야간경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① 자연의 빛에 순응하는 빛 환경 조성

빛과 어둠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빛과 어둠, 그림자가 공존하는 입체적 공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광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 디자인

친환경조명 및 밤하늘을 보존하는 광공해 없는 조명계획으로 자연과 친숙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빛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

도시의 정체성을 빛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가로, 상징 구조물, 건축물 등에 조명 계획을 실시하고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를 도모한다.

④ 보행자의 행태를 고려한 조명 디자인

안전과 보행자를 고려한 조명계획을 위하여 사용자의 행태 및 동선을 파악하고 빈도 및 조명 등을 분석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⑤ 친밀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을 위한 조명 디자인

야간에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기 위하여 친숙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⑥ 장소성을 가지는 시설물 특화조명 디자인

야간의 장소성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 및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조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 75 조 (야간경관 설계지침)

- ① 야간경관 설계지침은 도시 전체지역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도시 전체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 ② 야간경관 설계지침은 도시 전 지역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그림 V-12-2〉 야간경관 일반관리구역 종합도



제 76 조 (야간경관 요소별 설계지침)

① 조도

1. 지역별 공간의 쓰임에 따르는 필요조도를 확보하고,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2. 밝기의 그라데이션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및 분위기를 연출한다.

② 광원

1. 공간, 기능, 목적에 따라 효율 및 연색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광원을 선정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단,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 관해서는 투과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광원을 선정한다.
2.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높은 광량과 와트수가 낮은 광원의 사용을 권장한다.
3. 친환경 소재인 태양광을 축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의 파워와 기능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4. LED광원은 형광등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친환경적이며, 고효율과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③ 색온도

1. 기존 수변을 제외한 공간의 색온도는 3000K~4000K로 한다.
2. 수변공간을 계획할 때는 2000K~3000K의 색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인공 구조물은 대상물의 재료 및 색상에 따라 3000K~4000K로 한다.

④ 휘도

1. 밝기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디자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규정하는 요소는 휘도(밝기)와 반사율로, 밝기는 빛의 강도, 수량 및 사용 광원의 위치 등과 관련된다.
2. 조명의 휘도는 표면의 반사율, 빛의 강도, 수량, 광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3. 건물의 밝기는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한다.

제 77 조 (야간경관 용지별 설계지침)

① 주거용지

1. 건축물의 형성 패턴을 따라 야간경관의 축을 형성한다.
2. 저층 주거의 경관조명은 수목 및 낮은 볼라드를 이용한 리조트와 같은 조명방식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거와 연결된 중정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볼라드나 스텝 라이트(step light)로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선을 유도한다.
4.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휴먼스케일의 방식을 적용한다.
5. 저층 가로망을 활성화하여 야간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6. 저층부 라인을 연결시키는 수평적 조명과 건축물을 형태를 드러내는 수직적 조명을 통해 야간경관을 형성한다
7. 투광기는 고층 주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한다.

〈그림 V-12-3〉 주거용지 예시



② 상업·준주거·근린생활시설용지

1. 상업시설용지의 가로는 저층부 쇼윈도 조명으로 평균 조도를 유지한다.
2. 쇼윈도의 조명은 일반적으로 상점 내부 조도의 2~3배가 요구되므로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배치하며 두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 강약의 조화가 중요하다.
3. 쇼윈도 조명시간을 일정시간까지 연장하여 커뮤니티를 확보한다.
4. 자동 점소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광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및 유지비를 절약하도록 한다.
5. 주간에도 조형성을 갖춘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가로를 활성화 한다.
6. 메시지 전달의 역할을 하는 신기술인 미디어보드의 도입으로 즐거움과 정보를 제공을 권장한다.
7. 많은 통행량을 고려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주 조명보다는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형식을 권장한다.

8. 낮은 조도(10lx 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을 연출한다.
9. 디자인 조명기구 사용으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조명을 설치한다.
10.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한다.

〈그림 V-12-4〉 상업시설용지 예시



③ 공공용지

1. 색온도 높은 조명을 사용하여 친근하고 활기 있는 분위기 연출한다.
2. 야간활동(산책 & 스포츠)을 고려하여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도록 한다.
3. 문화예술공간, 공원, 경찰서 등에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도록 한다.
4.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밝기를 조절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연출한다.
5. 부분적으로 컬러조명을 사용하여 다이나믹한 공간 연출한다.
6. 1층 필로티가 있는 부분은 천정을 밝게 연출하여 개방감을 높인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를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3000K~4000K로 한다.
8. 자동 점소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광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및 유지비를 절약한다.

〈그림 V-12-5〉 공공용지 예시



④ 녹지지역

1. 우범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조명 요소를 활용한다.
2. 커뮤니티 밀집 지역에는 라이트 포스트(light post)를 설치하고 진입부는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으로 연출한다.
3. 공원의 주요 장소는 5~10lx 의 조도를 원칙으로 한다.
4. 발 밑의 밝기는 0.5~1lx 의 낮은 조도를 권장한다.
5. 수목의 높이에 방해받지 않는 보행자 조명등을 계획한다.

〈그림 V-12-6〉 녹지지역 예시

